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46回平昌郡議會

第 4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 1996年 11月 28日(水) 10時05分

場 所 :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會議場

監査日程 (第4次 監査活動)

1. 監査實施宣言(委員長)

3. 所管別審査

가. 商工課 所管	_____	1 面
나. 畜産課 所管	_____	20 面
다. 山林課 所管	_____	60 面
라. 建設課 所管	_____	104 面

(10時05分監査實施)

○ 委員長 禹康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
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상공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商工課 所管~~

먼저 상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공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商工課長 金昌吉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상공과장 김 창 길

(상공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禹康鎬 : 감사대상 사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薰 委員 : 이상훈 위원입니다. 방림면 운교리 광산개발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림면 운교1리 규석광산 개발허가가 언제 허가가 났는지, 자료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광산개발허가는 억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산개발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고 또한 산림을 훼손해서 상당히 그로 인한 여러가지 농작물 내지 하여튼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되는 사업은 억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되어서 방림면 운교1리에 광산개발 허가가 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商工課長 金昌吉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광산개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광구등록수는 219개소가

됩니다만, 가행광산은 7개소가 되겠습니까. 석회석 광산이 4개소가 있고 규석이 3개소, 그래서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방림에는 경동광업소 박우석씨가 대표로 되어 있고 그다음 국제광업은 이충길씨인데 방림면 운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종명은 두곳다 규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실시된 연도는 잠시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허가사항은 저희들이 협의를 공업진흥청에서 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할때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광구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익협의를 할때에 우리가 도에 올릴때에는 사실 여러가지 어려운점, 그다음 상수도 문제라던가, 자연훼손 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총 취합해서 저희들은 어려운 것으로 올려보내는데 허가사항은 지사님 허가사항이 되겠습니까.

○ 李相薰 委員 : 과장님 말이지요. 개발허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 商工課長 金昌吉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 李相薰 委員 : 이상입니다.

○ 劉燾文 委員 : 유돈문 위원입니다. 민원신청을 보면 담배소매인 신청이 많이 불허가 되었는데 어떤이유로 불허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외국담배 판매소가 자료를 보면 쌍용, 보광을 제외하면 진부에 1개소, 도암에 1개소로 나타나 있는데 실제 전매공사에는 이 4개소에서는 이렇게 많이 팔수 없다고 하는데 집행부 감독이 철저히 하면 담배소비세가 더욱 증가된다고 하는데 자료대로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국산담배는 월 우리군에서 6만갑이 팔리고 외국담배는 1,000갑에서 1만갑 팔린답니다.

우리군의 소매인 숫자를 보면 23개소로 따진다면 4개소에서 이렇게 많이 팔릴수 있느냐 하는 공사의 말입니다.

인근의 성우나 대명은 외산담배를 하나도 취급을 안한답니다.

우리군도 쌍용, 보광을 외산담배를 적게 팔게 유도가 안 됩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유돈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고한대로 저희 관내 담배 판매업소 현황은 약 323개소가 되겠습니다. 외제담배의 보급처는 강릉하고 원주 2개소에서 공급이 되는데 당초에 15개소가 외제담배를 판매를 했습니다. 봉평에 1개소, 진부에 8개소, 도암에 6개소, 이렇게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세계무역기구 WTO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여기의 협약관계로 공문화 해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담배판매 지정신청이 왔을때에 저희들이 구두로 국산담배에용, 외제담배 판매는 조금 하지 않는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그동안 11개소가 줄었습니다.

4개소는 지금현재 보광휘닉스파크, 그다음 용평에 용평청과, 용평스키장, 그다음 진부에 경북청과가 있는데 아마 경북청과도 11월말, 이정도 되면 용평청과도

거의 들어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말씀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소가 문제인데 용평스키장과 보광 휘닉스파크가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외제담배를 팔더라도 그 코너를 줄여달라, 외국인들이 사는것은 좋은데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세계무역기구의 협약관계 때문에 어떤 공문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인삼공사하고 협의를 할때에 전단이라던가 이런것을 조금해서 우리관내에서는 한곳이라도 외제담배를 파는곳을 불식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담배인삼공사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는 외제담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劉燉文 委員 : 담배인삼공사의 얘기는 전에는 전매서로 되었을 때에는 허가

가 자기네들 권한이었는데 공사로 되는 바람에 행정기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가서 전 같으면 담배를 안주면 되는데 지금은 담배를 못준다고 했다면 혼날판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각별히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외산담배가 많이 팔리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商工課長 金昌吉 : 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劉燉文 委員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스판매가 배달 거리를 적용해서 가스대금을 더받고 있는곳이 있는데 택시요금처럼 이것도 거리병산제로 해서 더 받을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별로 다 통일을 합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실때에 석유판매가격은 고시된 금액에 판매되는 반면, 가스요금은 배달조건을 거쳐서 거리병산제를 실

시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스요금을 배달조건에 붙여서 거리병산제를 실시한것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지금현재는 거리병산제를 안하는걸로 또 혹시나 만의 하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劉燉文 委員 : 아직까지 하는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관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것이 허가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속을 못하고 소비자가 돈을 더내는 일이 있으면 집행부서에서 업무를 불충분 했다고 지적을 받을수 있습니다. 챙겨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商工課長 金昌吉 : 각별히 주의를 해서 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劉燉文 委員 : 이상입니다.

○ 李慶鎭 委員 : 이경진 위원입니다.

유돈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배소매업 허가 신청이 전체 민원업무 허가 신청중에 불허한 비중이 45%인가 차지하는데 그렇게 많이 불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민원인의 민원을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모든 사항을 서류를 갖추어서 담배인삼공사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를 받은 담배인삼공사에서는 거리관계, 여러가지를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담배인삼공사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다시 민원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리관계가 주민들이 잘 몰라서 100m로 되어 있는데 거리를 잘 몰라서 95m가 되어도 100m이상 되는줄 알고 접수가 되는데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은 민원만 접수를 해서 담배인삼공사에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현지점검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러면 주민들이나 신청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군수가 불허한 것으로 판단하지 전매공사지점장이 불허를 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 商工課長 金昌吉 :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줄때에 담배인삼공사에서 통보한 사항을 거기에다 명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처리가 되지않고 불허가 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줍니다.

○ 李慶鎭 委員 :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실질적인 권한은 전매공사에서 발동을 하고 우리군수는 토스만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40% 이상의 민원인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있는데 그 규정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떤 거리라던가, 주택수라던가, 그런 규정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과연 그 규정대로 정확하게 엄밀한 심사에 의해서 합격, 불합격의 판단을 했는지 현장출장을 가보셨는지, 전매공사의 결정이 과연 타당한 결정을 했는지 행정을 주민

들하고 직접 최종적으로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과정에는 군수의 입장에서 우리군의 행정능력을 실추시킬수 있는 범위가 많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현지확인은 갔다 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商工課長 金昌吉 : 갔다온 사항은 없습니다.

민원접수시에,

○ 李慶鎭 委員 : 아니 과장님, 그럼 안 갔다오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시에 담배인삼공사에서 결정한다고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연구하지 않았고, 담배인삼공사 결정에 의해 따르는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문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접수민원의 약 45%에서 50%가 되는데 이런 사항이라면 지금현재 행정의 신뢰성이 낮아지는 이런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만 접수해서 담배인삼공사에 통보해주는 것이라면 인삼공사에서 접수를 받아서 결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에도 건의는 많이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실추되는것을 지금현재 우리군이, 그다음 사실 우리 군수가 결정해준것으로 민원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아마 조금 조정이 되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李慶鎭 委員 : 허가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군수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행정력이 상당히 실추되는 율이 높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의를 하신다면 건의가 되어서 관철이 되어서 모든 결정과 공문시행

을 전매공사 지점장이 하기 이전까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십자가 지는 부분을 우리가 떠맡을 필요가 없는 그런 차원에서 지점장하고 합동 현지 인이라던가 그런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부분을 상당히 소홀하게 처리하시는것 같은데 인정하시지요?

○ 商工課長 金昌吉 : 네. 인정합니다.

○ 李慶鎭 委員 : 규정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 商工課長 金昌吉 : 그것은 문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상공과의 업무중에 지역경제계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이라는 개별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이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전체적인 것은 경리계의 고유사무 일수도 있겠지만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작년도 군정질문에 지역에 업체가 있으면 지역업체를 수의계약 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으로 군수가 하겠다, 그대신 지역업체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답변을 군수께서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관내 수의계약 업체가 거의 70%이상 외지업체와 계약이 되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할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재무과장하고 협의나 의논을 한번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의 특별한 각오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商工課長 金昌吉 : 이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관내에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여러가지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생산품중에 지금현재까지 물품구입이 5,453만 9천원 그다음 공사용역 같은것도 30억해서 전체가 37억 4,000만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생산된 품목이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것을 우리 관내에서만 소비되는 부분보다 그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것 같아서 금년도에 제가 이런것을 한번 생

각 해봤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를 연말까지 만들어서 97년초에는 전국 시도에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수집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금년말까지 생산해서 우리 평창군 관내에서 이러이러한 물품들이 생산되어 있으니 많이 사용을 해달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전국 매체에 코트라무역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판촉홍보지원이란 것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전세계 170여개국의 컴퓨터에 연결되어서 많은 인원이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았더니 주소, 대표이사, 구입방법, 상품설명등 이런것을 전부다 입력시켜서 보내주면 연간 사용료가 66만원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것도 한번 우리가 매체에다 입력을 시켜서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품목을 널리 알려져 보는사항도 좋지 않겠나, 저희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보

았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것은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방향을 얘기하시는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우리지역 농공단지 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중에 동관이음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기자재, 특히 이부분에 상하수도 기자재를 납부 생산하는업체가 거성개발이라고 있는데, 지역업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대표적으로 농공단지업체를 활성화 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해서 얻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우진ACT에서 연간 판매하는 금액이 7,000만원인데 100% 관외 판매입니다.

관내에는 10원짜리하나 판매하지 않습니

다.

또 덕신휘팅 동관이음, 이회사도 역시 20억을 외지에서 판매하고 평창 관내에서는 10원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 기자재 8억 4,000만원은 판매 실적이 관내에는 10원도 없습니다.

한성산업 프라스틱 3억 6,300만원도 평창관내에 10원도 팔지 못했습니다.

어떤 책임감 느끼신것이 없으십니까?

이래가지고 농공단지를 어떻게 활성화 합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앞으로 미리 챙기지 못했던 그 부분은 더욱 공부해서 그런 우리 지역에서도 다시한번 팔수있는 길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관내일원, 교통안전시설물설치1식 8,000만원, 전액 군비를 들여서 제작을 하였고 사업은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제작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평창 전문업체에서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

는것 같은데,

○ 商工課長 金昌吉 :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 사업추진 금년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5,900만원이였고 추경에 2,061만 2천원해서 전체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차분은 7월 10일부터 8월 26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만, 2,563만 500원이 됩니다. 이것은 관내업체에서 했는데 나중에 발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나머지 차액 5,424만원은 전기시설까지 전부 포함한 그런 금액이 되겠는데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처음에 1차분은 졌습니다만, 전문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이것은 전문업체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업체가 아니였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차분에서 2차분까지 구매 내지는 공사계약한 일건서류를 보여

주실수 있습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네. 알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지금 보여주십시오.

○ 商工課長 金昌吉 : 경리계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 李慶鎭 委員 : 제가 여기에서 보고싶은 내용은 2차분도 역시 1차를 했던 회사나 똑같은 회사라고 판단이 되고 기술적으로 1차회사에서 2차부분도 관내업체로서 충분한 자격과 기술과 법적인제한계가 분명히 이상이 없는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商工課長 金昌吉 : 관련서류는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禹康鎬 : 지금 서류제출이 안 됩니까?

이경진 위원, 그 서류를 보시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 李慶鎭 委員 :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술적으로 8,000만원에 대해서 3분의 1은 관내업체가 하고 3분의 2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관내업체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이 있는것 같은감이 있길래 그 서류를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안하겠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김종영 위원입니다. 유인물 18페이지에 보면 가스안전 점검에 관련한 행정지도실적 및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밑의 행정지도 실적을 보면 부적합 판정이 11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적합 판정에 지적사항의 정도는 어느정도 위반한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商工課長 金昌吉 : 김종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있는것과 같이 가스가 많은 사고의 유발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약 4회에 걸쳐서 가스안전공사, 그다음 소방과 출소, 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바 있는데

부적합 장소라고 하는것은 라인이 2m이상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것이 상당히 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고무호스도 T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 가스벨브에서 호스로 연결되는 부분이 3m 이내가 되어야 하는데 3m가 넘는 경우도 많구요. 그래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밑의 1층에서부터 9층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것들을 부적합하다 해서 지적을 했고, 이것은 다시 보관을 시켜서 다시 가스안전공사가 점검을 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러면 가정이나 다 같은 내용이겠지요?

○ 商工課長 金昌吉 : 가정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많은 가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1명이 되는데 가정까지는 점검에 손실을 보낼수 없고 큰업소 중심으로,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그업소만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다음 시가지내에 인접된 가옥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저장창고 같은것은 없습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저장 창고가 지금 현재 용평면에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런데 그것은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저장 창고가 밀접된 가옥 가운데 있다는것은 가옥에서부터 몇m, 얼마의 거리를 떨어져서 저장창고를 설치해라 하는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네.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런데 그것은 8개읍면중에 몇곳이나 있습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지금현재 가스저장업소는 우진ACT, 주진리에 1개소밖에 없고, 그다음 냉동제조업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8개읍면에 보면 가스 가정용 판매업소가 있겠습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네.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 판매업소들이 가스를 저장하는데 일단 창고에 넣었다가

배달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네.

○ 金鍾永 委員 : 그런데 배달하기 위해서 저장해놓은 창고가 시가지내에 아직도 있는 창고가 있습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네.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런데 어떻게 시가지내에 설치를 합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 金鍾永 委員 : 파악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스가 대형사고를 유발하는데 지금 시가지내에 저장고를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저장을 했다가 수시로 운반한다 하는것은 엄청난 위험성이 뒤따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 商工課長 金昌吉 : 네. 알겠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내용 및 실적에 대해서 유인물을 보면 벽수산업, 평창식품, 한국광연, 오대산식품, 이 업체들은 지금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농공단지내 벽수 산업하고 평창식품, 한국광연, 오대산식품, 이것은 지금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평창식품은 어떤식품을 생산합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메밀가공 입니다.

○ 金鍾永 委員 : 지금 평창군내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농공단지안에 있는 업체만 활성화 대책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 군내에는 다른업체가 없습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있습니다만, 여기에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니다.

○ 金鍾永 委員 : 군의 전체 업체에 대해서 현황을 서면제출 해주시겠습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 金鍾永 委員 : 그다음 20쪽에 보면 물가조사 및 예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품목이라던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군 전체의 판매업소의 판매사항을 보면 소비자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물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업으로 하는자는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가격이라던가 아니면 원산지 표시라던가 이런것이 잘되어야, 잘안되는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商工課長 金昌吉 :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사실은 정찰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초에 시군교체를 해서 점검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사람들이 우리 평창관내 전체를 한것은 아니고 몇개 품목만 점검을 한 사항에도 많은 지적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나 춘천을 갔다온것이 있는데 이런것은 행정력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소비자가격, 정찰제 이런표시가 안된부분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총 행정력을 집중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연간 행정지도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분기로 시군교체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분기로 실시됩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잘안됩니다.

○ 金鍾永 委員 : 1년에 한번정도 그저

○ 商工課長 金昌吉 : 1년에 한번정도가 주관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찰제가 아닌것을 많이 보고 있으면서도 관내에서 어렵기 때문에 도가 추가되어 교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여기에 대해서는 시군교체로 행정지도나 이것도 물론 해야되겠지만 군 자체로도 수시로 행정지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도 보호하고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商工課長 金昌吉 : 알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김두경 위원 입니다. 김중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군에서 소비자보호센터 접수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저희과에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한 부분은 원주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만일 물품을 수거하는 경우는 물품을 그쪽으로 보내고 그다음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소비자에게 다시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소비자 문제를 접수 처리한 실적이 최근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네. 있습니다. 많은 건수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저희가 접수한 건수는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몇건입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잠시후에 대장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각종 대민민원 서비스는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소비자보호 업무는 솔직히 유명무실한 형편입니다. 과장님께서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활성화 할 계획은 서있는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商工課長 金昌吉 : 그런 사항도 지금 현재 하나의 위탁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다음은 가스시설 시공자 등록이 우리 관내에 등록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스배달 판매하는 분들에 대한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은 신고제로 판매나 하는지, 허가제로 판매를 하는지?

○ 商工課長 金昌吉 :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인증이 있어야 그런 인증을 한사람에 한해서 하게 됩니다.

○ 金斗經 委員 : 여기에 등록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시설은 되지않고 판매만 하게 됩니다.

○ 金斗經 委員 : 마지막으로 차종별 등 록 현황이 나오는데 특수 23대는 뭘니까 외제입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21대 포크레인, 페로이다 이런겁니다.

○ 金斗經 委員 : 외제차량은 별도로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그런것은 없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이상입니다.

○ 李慶鎭 委員 : 과의 시행 결의한 공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경리계는 계약만 했을것 아닙니까?

○ 禹康鎬 委員 : 제가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출된자료 1~2쪽, 유효주차장 운영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진부 시외버스터미널 유료주차장은 언제쯤 인가가 났습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그것이 11월 25일 인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작성을 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금액은 시간당 얼마입니까?

분당 얼마입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30분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평창군에 최초로 개인 유료 주차장이네요?

○ 商工課長 金昌吉 : 네.

○ 禹康鎬 委員 : 다음 자료 12,13,14쪽입니다.

택시회사별 기준이 실지 운행하지 않는 부분이 16대나 있는데 기사부족, 강제경매처분 해서 나와 있는데 실지 이런부분 외에 회사 나름대로 사정이라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지금현재 미운행된 16대는 전부 법인택시입니다.

평창이 8대고 삼일택시가 5대, 횡계택시가 5대가 되는데 이것은 아마 기사부족도 있겠습니다만, 1일 납입하는 금액 이런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휴지를 6개

월씩 내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가 16대가 정수에
는 있는데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택시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
습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네. 개인택시 하
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지금 평창군에 개인택
시 인가를 안내준것이 몇년 되었거든요.
회사택시를 한 회사에서 10년이상씩 해
가지고 개인택시 하나만 바라보고 운전
기사를 하는분들은 굉장히 우리군을 원
망스럽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
떻게 생각합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택시회수가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서도 저희가
차량허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휴지가 16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10월말 현재는 27대가
법인택시가 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 법인택시가 146대인데

146대중 27대, 16대, 이런 형태로 있다
는것은 물론 회사택시를 10년정도 하다
가 개인택시 하는것이 상당히 소망이겠
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
니다.

물론 한 3년동안 개인택시가 TO가 승인
이 나지 않았습디다만, 기존 법인택시가
이렇게 휴지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연구검토해볼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
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차하는 경우는 많은 인
구가 늘었을때 수용차량이 부족될때, 이
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로
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
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결정권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는데 각대표
경찰, 개인택시, 법인택시 대표 여러분
들이 구성되어서 하는데 심의를 얻을때
에 우리가 증차할 목적을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제시를 해주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禹康鎬 委員 : 업무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미운행 대수 부분 TO를 회사택시를 없애고 개인택시를 증차해 주는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지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가장많고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것은 그만큼 수요자가 있기때문에 그런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휘닉스파크도 그렇고, 용평, 오대산권, 다양하게 활용할수 있는데 10년 이상 한회사에 근무하면서 개인택시 못받는다는 것은 단적인 예로 공무원생활 10년해가지고 주사보에서 주사 못다는것하고 다를것이 있습니까?

그것때문에 개인택시 바라보고 회사택시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10년이상 지나가도 못받았으니까 불안해서 생계걱정해서 운전도 못하는편 아닙니까?

그런 예로도 생각해 주셔야 될텐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회사 택시를 자꾸 휴지하

지말고 그것을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팀은 아닙니다만, 전팀에서 한번 슬쩍 비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주 대단한 역반응이 나오더라구요. 요전에 우리가 한번 그러지말고 줄이면 되지 않느냐, 운행도 못할것을 왜 TO만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서로가 불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원하는대로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회사택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미운행대수를 가능한한 줄여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 商工課長 金昌吉 : 네. 알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다음 13번, 자동차등록 특혜부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으로 쓰고있는 군수차량 강원27고 2000번이 96년 2월 22일날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기 위해서 제 차를 전에있던 구번호를 제가 차를 바꿔서 번호를 달았는데 7월 6일날 달았

어요

1721번입니다.

2월달에 달은차가 2000번이고 7월달에 달은차는 1721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용차에 한해서 단말기를 사용, 자동적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지침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으로 부여했던점 당무자인 저자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는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1건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禹康鎬 委員 : 앞으로 물론 그러셔야겠지만 군수라고 해가지고 2000번을 고유번호인양 달고다니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지 주민이 와서 번호를 달면서 2001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면 군수는 되는데 왜 나는 안되냐고 그러면 똑같은 군민인데,

그런 우수한 모양새가 충분히 나올수 있

습니다.

이 사실 엄격하게 구분하면 수동으로 했다 하는 이 자체는 범법행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가 2000번 달으라고 했으니까 달았 달았을수도 있을테고,

알아서 달아 드렸을수도 있었을텐데, 실지 이러한 사항이 추후 다시 발생되지도 않겠지만 참 보기 안좋은 애깁니다.

그냥 달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아무 번호면 어떻습니까?

꼭 내가 군수라고 2000번을 달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추후 이런일은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商工課長 金昌吉 : 예. 알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이상입니다.

○ 委員長 禹康鎬 : 보충질의 하실 의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상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상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時00分 監査中止)

(11時20分 監査繼續)

○ 委員長 禹康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畜産課 所管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축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축산과장 정의수

(축산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禹康鎬 : 감사대상 사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委員 : 제가먼저 질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 委員長 禹康鎬 : 그렇게 하십시오.

○ 李洙現 委員 :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과장님께 지금 위원장님께서
선서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주시킴으로써
질의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어양식장에 대하여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삼척시와 같
이 주민소득과 연계되지도 않고 환경만
오염시키는 일부 송어장에 대해서 우수
인용허가를 불허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이수현 위원님께
서 질문하신 송어양식장의 우수인용허가
불허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장 설치 과정에서 개별 법령현황이
됨에 따라 우수인용허가는 하천법에 관
련된 사항으로서 본군에서는 건설과가
본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인용허가에 대한 불허처분
문제는 양식장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축
산과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
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렇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李洙現 委員 :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화 양돈단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95년 12월
사업장 후보지 변경, 사업계획을 변경한
이후의 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화 양돈단지조성사업장의 신청인
명단을 보면 6농가가 있는데 이 6명중에
지금 정주민이 몇명이나 됩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정주민이라고 하
면 지금현재 조상때부터 우리 평창군에
서 살고있다고 하던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李洙現 委員 : 아닙니다.

본인이 대화에 실지 거주를 하면서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겁
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알았습니다.

6인중 현재 4인이 실제 양돈장에서 동참
을 하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확실합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李洙現 委員 : 과장님 분명히 제가 질문을 시작하기전에 위원장님 앞에서 선서하신 내용을 주지를 시켜 드렸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4명이 맞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그렇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6명중에 지금 사실상 1명은 거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4명이 거 그런데 왜 4명이 거주를 한다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자꾸 하십니까?

지금 이희찬씨, 이순재씨,

두분은 지금 대화에 거주를 하고 있고

신기선씨는 지역 정주민이고 그다음

김원재씨는 주소가 지금 대화면 신리 산 1123-5번지로 되어 있는데 실지 거주는 진부면에 거주하고 있지요.

주민등록만 대화로 되어 있고, 그다음

임환씨, 성범룡씨, 임환씨는 주소가 춘

천으로 되어있고, 성범룡씨는 대화면 신

리 산 958번지에 주소는 되어 있지만

지금 거주는 않하십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李洙現 委員 : 3명이지만 왜 4명입니까 내용을 확실히 알고 답변하셔야지.

○ 畜産課長 鄭義秀 : 지금현재 미거주자 2인을 제외한 4인중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김원재씨가 진부에 거주한다는 사항은 가족은 진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돈장 경영을 위해서 현지에서 숙식은 안하지만 계속해서 동참을 하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李洙現 委員 : 동참은 서류상으로만 동참을 하지 지금 출퇴근을 합니까 뭘 합니까?

과장님이 매일 출근부를 만들어 놓고 도장을 받으셨어요?

신기선씨도 지금 대화의 정주민이지만 이사업에 명단만 올려져 있는 사람이실지로 양돈단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3명이지만 어떻게 4명입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신기선씨는 금년도에 와가지고 나중에 영입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실지로 이사람들중에

한두명은 지금현재 위장전입자 입니다.
과장님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확인을 해
서 주민등록을 말소를 해야할 이런 위치
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히 알고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제출해주신 237쪽에 보면 대
화면번영회에서 96년 6월 11일날 대화양
돈단지 설치 반대의견을 제출한것이 있
습니다. 그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
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알고 있습니
다.

○ 李洙現 委員 : 지역주민들이 계속 이
렇게 반대 하는데도 집행부에서 이 양돈
단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는 이유가 뭘
니까? 군수님이 계속 추진하라고 지시
를 하셔서 하는 겁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군수님이 지시사
항이라고 하시기 이전에 물론.....,

○ 李洙現 委員 : 아니 그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필요성이라던가 이런데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을 여러번 들었고 지역주민들이 이
렇게 계속 반대를 하고있는 사업인데
계속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이유가 뭐냐
는 애깁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는거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사업의 필요성이
라던가 양돈산업의 지방확대라던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 축산과 부서로 봐서는 축
산업에 현재 소위주의 평창군축산을 종
서가축 쪽으로도 확대실시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럼 군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는것이 아니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군수님의 단순한
지시사항으로 판단할것이 아니라 물론
군수님이 군정시책을 펴 나가시면서,

○ 李洙現 委員 :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하세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에 들어왔고 과장님이 이 사업이
타당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 추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겁니까?

○ 委員長 禹康鎬 : 축산과장님 마이크를 밑으로 내리시고 마이크에 바짝대고 말씀하세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물론 군수님께서도 양계 양돈단지의 기반이 취약하니까 우리군 관내의 축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돈단지사업과 양계사업을 발전시키도록 말씀은 계십니다.

그러나 꼭 이지역을 굳이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 李洙現 委員 :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께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더라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확실히 없었어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李洙現 委員 : 그럼 양돈단지 추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언급을 안하셨습니까 왜 빨리 안되느냐고 독려를 안하셨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진행상 법령상의

명확한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계년도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시한성문제보다도 완벽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러니 군수님께서 사업독려를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께서 과장님께 이 사업의 독려를 계속 하셨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물론,

○ 李洙現 委員 : 아니 과장님 자꾸 답변을 돌리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군수님이 지시를 하셨느냐 안하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사업의 독려를 하셨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물론 독려도 챙기고도 계시지만 저희 축산과 부서에서 소관사무 이기 때문에 열심히 챙기는것은 사실입니다.

○ 李洙現 委員 : 독려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군수님 지시사항을 보면 '96년

7월 29일 군수께서 양계, 양돈사업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축산과에 지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있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물론 아까 내용과 한가지지요.

○ 李洙現 委員 : 그 내용이 있으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지시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 委員長 禹康鎬 : 이수현 위원님 잠깐 만요. 부군수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아무도 나와있지 않아서 보충질문 자료나 서면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챙겨줄수 있는분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나와가지고 답변하는 과장, 계장이 계시는데 계장님이 보조답변자료를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계장이 내려가서 자료를 챙겨와도 기획감사실에서 아직까지 한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것좀 각별히 챙겨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서 바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

렇게 부탁드립니다.

○ 李洙現 委員 :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委員長 禹康鎬 : 네.

○ 李洙現 委員 : 이 대화 양돈단지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계속 독려하셨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군정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사업 분야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독려를 하셨다고는 생각이 안되지요.

○ 李洙現 委員 : 안된다고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李洙現 委員 : 그럼 군수님께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라고 독려한 사실이 없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물론 주요사업추진상황 업무보고라던가 그런 기회에는..

○ 李洙現 委員 : 아니 과장님 자꾸 말씀을 길게 하지 마시고 지금 자료에 보면 나중에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렵게 하세요. 독려를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자료에 나중에 보면 다 나와요.

확실하게 답변하시라니까 왜 자꾸 길게
답변하십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특별히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하신적은 없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분명히 군수께서 대화
양돈단지 사업을 독려한 사실이 없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특별하게 개별적
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없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이 사업에 대해서 개
별적으로 독려하신 사실이 없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그렇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럼 과장님이 독단적
으로 여태까지 이 양돈단지 사업을 계속
추진해온 겁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사업의 기본계획
은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 李洙現 委員 : 아니 답변을 그렇게
길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군수께서는
특별히 독려한 사실은 없는데 과장님 의
지로 여태까지 이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
해 왔다는 이말씀 아닙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저의 의지라기 보

다도 저희 축산과가 맡은 소관사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진행한것은 사실입니다.

○ 委員長 禹康鎬 : 축산과장님 지금 이
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답
변하는 내용과 비켜가기식의 답변이 되
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사실 책임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축산과장 혼자서 그것을 끌고갈수 있는
부분도 물론 아니고 이수현 위원이 질의
하신 내용,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짧
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확인을 해가면서 제가 그 부분을 증
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6월 11일 대화면번영회에서 양돈
단지설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뒤에 6월
14일날 평창군수의 회신 내용을 보면
현대식의 분뇨처리시설로 환경오염을 예
방하고 지역주민과 불화가 없도록 사업
자와 연계성 등 방안을 찾고 있으며 이
와같은 사항이 어려울시 사업계획을 재
검토 할것이니 우리군 축산발전을 위하
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의 연계성 등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방안을 찾았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지역주민들이 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도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양돈단지사업의 설치와 그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업참여 농가들도 지역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됨과 아울러서 자기들 욕심만 차리지 않고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은 최소화 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쪽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럼 여태껏 지역주민과 불화가 없도록 연계성 등 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 찾지 못했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분적으로 몇분들만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강경하게 표시하고 있고 여타지역 주민들은 똑같은 농촌사업인데 직접적인 피해사항만 발생되지 않는다면 군

이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걸로 의견들을 모아 가는걸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허공에 뜬말만 과장님 듣고 다니시네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몇분은 알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누구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번영회장님을 비롯해서 그다음 이장님,

○ 李洙現 委員 : 지금말씀하신 그 두분은 대화면번영회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李洙現 委員 : 대화면번영회장님을 만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지금현재 아직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다 그런애깁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협조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된 사람들이 누구냐는 말입

니까?

협조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사실인지 그것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죄송하지만 그 이름은 별도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李洙現 委員 : 그럼 사실확인도 안하고 누군지도 모르면서 사업자와 누구하고 협조가 되었다는 애깁니까?

그냥 말하기 좋게 일부 주민들하고 협조가 되었다고 공문서 보면 계속 그런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확인도 못하고 어떻게 협조가 되었다고 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다음 사업계획을 어려울시에 재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평창군수가 대화면번영회장 앞으로 보낸 회신내용입니다.

이와같은 사항이 어려울시는 사업계획을 재 검토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아무런 연계방안도 찾지 못하고 협의도 전혀 되지 않았는데 재 검토 하고 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표현상 사업계획의 재 검토라 한것은 사업진행을 중단한다 하는뜻에서 생각이 될수도 있지만 현시점까지 아직까지는 그러한 사항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럼 거짓말 한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창군수가 대화면번영회장님한테 거짓말 한것이 아닙니까 다음 여기보면 대화시내 주민의견 해서 축산단지후보지 선정시 대화 주민과 사전 협의없이 선정된것에 대한 불만표시라고 되어있습니다.

계속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그래놓고 대화주민과 사전협의 안한 이유가 됩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라고 하는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것이 아니고 참여농가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농가들과 지역주민간의 대화의 결실을 맺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래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李洙現 委員 : 그럼 평창군수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 畜産課長 鄭義秀 : 관계가 없는것은 아니지요.

○ 李洙現 委員 : 그럼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론을 이미 수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반대민원을 접수하는데 그것은 아랑곳 없이 이것은 사업자와 주민들이 해야될 일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물론 행정관서에 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사업자가 직접 고리를 풀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李洙現 委員 :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 자료를 확인하다보면 정확한 답이 나올겁니다.

그다음 양돈단지 대표 이희찬씨가 의견 표시한 내용을 보면 대화시내와 후보지와의 거리는 약 3km 이상으로 악취 및 유해곤충에 따른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

을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대화시내와 후보지와의 거리가 약 3km 이상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 확인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후보지로부터 시가지까지

○ 李洙現 委員 : 확인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물론 차량미터기를 이용해서 거리측정은 해봤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래서 3km이상 됩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미터기에 나온 거리는 그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러면 직선거리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화시내에서 양돈단지 사업장 후보지와 직선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도로상 거리보다는 짧겠지만 그정도 안나오겠습니까?

○ 李洙現 委員 : 직선거리가 3km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저는 그렇게 판단

하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지금 사실 직선거리는 1km 미만입니다. 어떻게 자동차 타고 메타기나 꺾어가지고 올라가서 산길을 이리돌고 저리돌고 해서 올라가는 길을 측정을 한 3km이상 된다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직선거리가 3km가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1km도 안됩니다. 도면놓고 측정해 보세요.

그다음 악취 및 유해곤충에 따른 주민 생활이 불편이 없을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랬는데 악취와 유해곤충도 자동차 길 따라 옵니까? 아니지요?

직선거리 측정하셔야지요.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지요.

그다음 수맥단절로 지하수 고갈시는 책임지고 급수 해결하겠음.

이것은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겁니까?

이 내용도 보면 나중에 수맥조사한 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 해서 수자원봉사 및 지질 학계 등에 의뢰해 수맥을 검사하거나 하안미1리 주민과 수자원 해결 지속적

해결하겠다고 되어 있으니 이것은 이 뒤에가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축산단지조성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최소화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는 커녕 이거 공개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전혀 얘기도 없이 행정적인 절차를 여태까지 계속 추진을 해온 사항이지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쩔수 없이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물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계속 추진하셨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그렇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좋습니다.

그다음 평창군수가 '96년 9월 11일날 국토이용 국법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지사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시설장비의 자동화로 지역주민

소득 및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어떠한 이 양돈단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에 어떠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우선 총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업의 기본목표와 한가지로 현재 극히 취약한 우리군의 양돈산업기반을 확충할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된다고 생각되고 아울러서 대단 위 양돈단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사료를 비롯한 모든 물자조달이 우리지역 관내에서 진행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소득, 그다음 지금현재 관내 소비를 위한 충분한 확보문제도 외지로부터 계속해서 많은 숫자가 사들여오고 있는데 지역내에서 생산 공급함으로 인해서 물리 비용 절감이라던지 또는 적기조달이라던지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이되고 또 그와 부채적으로 관내 도축장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지방세도 증대될 수 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래서 여태까지 추진을 하셨습니까?

참고로 지금 도축세 자료제공 한것을 보면 1년에 도축세 2,200만원이 지방세수 수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1년에 약 30억이 지방세수로 징수되는 생수공장 같은것은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억입니다.

그런데 이 양돈단지는 어떻게 1년에 2,200만원 밖에 지방세수가 도축세가 증가안하는데 계속 강제로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지금 말씀하시는 도축세는,

○ 李洙現 委員 : 답변을 요구한것이 아니고 참고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1년에 30억씩 지방세수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지금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고작 도축세 2,200만원 수입이 된다고 이것을 주

민들한테 협의도 없이 계속 행정적으로 추진 했다는것은 누가 책임을져도 책임을 져야할 사항입니다.

그다음 '96년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해가지고 축산과에서 양돈단지 대표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요청한 내용이 양돈단지 조성사업 참여농가 현황 및 변경사항, 양돈단지 조성사업 농지매입 현황, 대화면 하안미1리 주민들의 사업반대와 관련한 지하수맥조사 실시내용, 기타 본사업 추진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했어요.

축산과에서 이런 자료가 없어서 양돈단지대표 이희찬씨에게 자료요구를 한겁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이 자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존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위해서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긴급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런데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양돈단지 조성사업 참여농가 현황 및 변경사항도 없어요. 없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제가 요구할때에는 주민등록상의 전출입이라던가 또는 포기된 농가에 대해서 퇴거라던가 그런 종합적으로 자세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서식을 제시하지 않고 내용만 제시했더니 그런내용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李洙現 委員 : 담당부서에 자세한 자료가 없다는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20일날 자료요구를 공문을 발송했는데 21일날 자료가 들어왔어요.

○ 畜産課長 鄭義秀 : 21일까지 감사자료를 종합제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긴급히 서둘러서 회신을 받은겁니다.

○ 李洙現 委員 : 다음은 지하수맥 조사 실시내용은 본 위원회 조정질문 답변내용에도 나와있지만 거기 150t 가량의 수맥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t 이상인 수맥이 4개소 있는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답변을 어디에다 비중을 두고 본 위원 이 판단을 해야 합니까?

과장님께서서는 150t 가량의 수맥을 발견 했다 그랬고 사업자들의 수맥조사 실시 내용에는 200t 이상의 수맥이 4개소 발견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맥 조사실시 내용이 됩니까? 그냥 타이프만 쳤어요. 직인도 하나 없고, 나중에 또 확인이 되겠습니까, 수자원개발공사라던가, 지질학계라던가 등에 요청한 사실이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나오는 사항이지만, 그냥 하얀 백지에다가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것이 무슨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직인도 하나 없고 글자만 그냥 타이핑 해가지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 畜産課長 鄭義秀 : 247페이지에 양돈 단지 대표자가 표지에만 도장을 찍고 뒤의것은 첨부물입니다.

○ 李洙現 委員 : 표지만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맥 조사 실시내용에 대해서는 근거있는 어떤 공신력있는 서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 畜産課長 鄭義秀 : 248페이지의 내용은 247페이지 표지문서의 첨부물입니다.

○ 李洙現 委員 : 표지서의 첨부물인데 자료에 지하수맥조사실시내용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 200t 이상 수맥이 4개소 있다고 조사되었다고 하는 말을 그냥 믿어야 됩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평시에는 제가 지역주민의 반대여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6월달에 서울에 있는 전문지역 상사업체의 기술자를 모셔다가 현장을 답사를 시키는 과정에서 최소 150t 에서 200t 까지 한가닥의 수맥에서 지하수가 가능하다 하는 그분들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론적으로 이분들이 그러면 어느위치에다 굴착을 하면 그 정도의 물량을 얻을수 있느냐는것도 말하자면 예비조사과정에서 확인이 되었나 하

니까 그분들은 자기네들한테 용역만 주어진다면 예비조사의 결과에서 나온 물량은 틀림없이 자신있다고만 얘기하고 어느위치라던가 그런것은 사업자들한테 적어주지 않더랍니다.

○ 李洙現 委員 :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수자원개발공사라던가 지질학계라던가 등에 요청을 해서 확실한 근거있는 대책을 구성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전혀 그런것이 없잖습니까 그것은 그사람들 말이지 그것을 어떻게 담당과장으로서 그냥믿고 그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군정질문에도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고 150t 이라고 했다 200t 이라고 했다 말이 됩니까?

군정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이 틀린사항인가요? 이것이 틀린사항인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이분들이 얘기하는것은 정확하게 진술적으로 정립을 시켜서 얘기한것이 아니고 150t 에서 200t 가량 자신있다고 얘기하는 사항인데 군정질문 과정에서는 저는 그의 최소범

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다음 자료요구한 내용도 11월 20일날 발송해서 11월 21일날 자료가 하루만에 들어왔는데 다른 민원서류가 이렇게 처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축산과 직원이 출장갔다 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대표를 공문서가 조잡해가지고는 도저히 감사자료를 21일까지 종합제출을 해야할 시점하에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다 모셔다가 자료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알겠습니다.

그다음 농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보면 축산단지 조성은 자금능력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과다한 투자가 되지 아니 하도록 참여농가수 시설투자 계획등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기관에 검토의뢰하여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기관에 검토의뢰 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사업계획서의 작

성은 농가들이 작성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농가들이 그냥 작성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그리고 사실상 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은 전문양돈인이라고 주민들이 믿을수 있는 사람들이고 대표 이희찬씨는 실질적으로 경영계획이나 사업계획은 물론이고 도내 다른 단지의 사업계획 작성이나 하는것까지도 자문을 주고있는 사람입니다.

○ 李洙現 委員 : 좋습니다. 이희찬씨가 전문가라는 사실을 장황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통합실시요령에 분명히 사전에 전문기관에 검토의뢰하여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느냐 안했느냐 묻는데 자꾸만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사업계획서 작성은 군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참여농가 신청자들이 하는것이기에 때문에.....,

○ 委員長 禹康鎬 : 축산과장님, 지금 하신 답변은 조금전에 하신 답변하고 동일한 답변인데 이수현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간단하게 질문하셨는데 똑같은 대답을 반복해서 답변하시면 어떻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군에서는 절차진행한것이 없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사업자는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사업자는 물론 축산기술연구소라던가 농촌진흥청이라던가 전문기관에 교육교재 또는 학교세미나 교재 그런것을 충분히 가지고 또 기본계획을 가지고 직접 쫓아다니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작성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여기에 보면 사전에 전문기관에 검토의뢰하여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꾸 다른말씀을 하시나요. 전문기관에 검토의뢰하여 한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것을 했느냐, 안했느냐 여쭙봤는데 자꾸 다른말씀을 하시는데,

○ 畜産課長 鄭義秀 : 전문기관에서 작성해주는 것은 아닐겁니다.

○ 李洙現 委員 : 전문기관에 분명히

검토의뢰하여 작성하지 않았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그렇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다음은 자료 313쪽을 보면 평창군수가 95년 12월 28일날 강원도지사에게 축산단지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통지를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 후보지를 재확정하여 사업추진코저 사업계획 일부 변경 보고합니다.

이 후보지를 재확정 하는 과정에서 왜 주민 여론수렴은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95년 12월달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당초 후보지가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이 내렸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후보지를 택해야할 입장에 처해 있었는데 이분들이 '95년 상반기에 대화면사무소에서 있던 사업설명회에 그자리에 있던 참석자들이 대부분 똑같은 의견으로 당초의 계획했던 신리 후보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

는 사항이고 말하자면,

○ 李洙現 委員 : 과장님 이러면 하루 이를 열흘을 해도 안끝납니다.

새로운 후보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를 여쭙본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후보지를 재확정 하는 과정에서 왜 주민여론을 수렴을 안하셨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후보지 선정이라는 자체는 토지매수가 전제로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토지매수를 하기 이전에 그 지역을 양돈장 후보지로 결정하기 이전에 당시의 변영희장님, 그리고 대화 8리 이장님과 하안미2리 이장님들한테는 단지대표가 자기자금을 들여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가능여부를 조심성 있게 충분히 지역주민 대표자들한테서 의견을 제시해서 그분들로부터 당초 설명회때도 범골청도라면 참석자들의 공통적인 의견들이 있었던것과 아울러서 막상 토지를 매수 계약하기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지역주민

대표 어른들 하고는 사전에 충분히 의논을 거친다음에 토지소유주들과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주민들과 왜 사전에 주민여론을 수렴을 안하셨느냐고 묻는데 무슨 엉뚱한 답변만 그렇게 계속 하십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그당시에 사업자 대표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분들, 당시의 번영회장이라던가, 또는 마을의 이장, 그분들하고만,

○ 李洙現 委員 :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까? 무슨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문는말에 답변만 해주세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알았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다음 역시 수신은 대화면장이예요. 평창군수가 '96년도 사업시행 사전준비 철저히 해가지고 공문 내용에 보면 농지전용절차가 완료와 동시에 부지정지, 토목설계, 건축허가신청 일건서류준비, 가축분뇨처리시설등 설계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련의 절

차를 해빙기 이전에 공사 조기발주토록 부단한 사업지도 시행, 계속해서 평창군수가 대화면장에게 사업을 독려하고 있어요. 축산과장은 물론이고 대화면장한테도 계속해서 양돈단지조성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내용을 확인해보면, 그다음 95년도 12월 30일 내용인데 자료가 년도별로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축산단지조성사업 지방비보조금을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 하였기에 알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이월이 되었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이월이 되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지불이 안되었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집행 못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지금 이월내용을 보면 계속 내부결재 내용인데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이 생기고 있다 하는것을 평창군수가 계속 알고 있어요. 내부결재까지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이 이 사업을

반대한다 라는 사항을 계속 알고 있어요
95년도 12월 30일날짜 입니다.

평창군수가 결제까지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계속 알고 있어요.

○ 委員長 禹康鎬 : 이수현 위원님!

위원 증식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식사
후에 다시 질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알겠습니다.

○ 委員長 禹康鎬 : 위원 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時08分 監査中止)

(13時40分 監査繼續)

○ 委員長 禹康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 입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내용중에서 '96년 7월 29일 군수지
시내용하고 그다음 재확정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매입을 했으면 등기부등본이나
아니면 토지사용승락서를 서면으로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다음은 민원서류 검토의뢰 사항에 주관
부서의 의견을 보면 주민공청회 실시요
청에 따른 필요성 및 공청회개최 계획
여부 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는 사전에 주관부서에서 계획
해서 실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지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최여
부를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 민원서류검토 의견서에 사업설명
회의 개최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본건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 절차상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면의 농지위원회에서 본건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대다수 위원들이 사
업시행이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결정된
후에 군수에게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의한 절차 진행 과정상에서 이미 면의 농지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사항을 군단위에서 인허가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절차는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회신된 겁니다.

○ 李洙現 委員 :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전용협의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의 그런 의미가 있는거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 李洙現 委員 : 글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곧바로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참고자료이지, 그다음 '96년 2월 9일날 축산과장이 산업과장 앞으로 농지전용협의검토 의견을 회신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공문 내용을 보면 사업장 후보지가 확정됨에 따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사업후보지가 확정되었다는 애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본건은 대화면 농지관리위원회로

부터 소득원 개발과 환경보존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심의된 사안이므로 허가처분과 연계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재수렴 할 수는 없으며, 허가처분과 연계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재수렴 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지 할 수 없다는 애기가 뭔에깁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민원사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전 절차가 진행된 사항을 가지고 주관 부서가 아닌 민원사무의 주관부서가 아닌 사업시행 부서에서 다시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군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축산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주민불편사항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는 애기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들을 속이고 주민들의 의견은 뒤로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추진하면서 여기도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그다음 본사업장 후보지에 토지매입 확보 과정에서 사업시행농가 대표자 주관으로 인근마을 대표자 및 주민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환경오염 및 주민의 생활민원 발생우려는 없을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축산과장님이 산업과장님한테 협조공문을 보낸 내용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환경오염 및 주민의 생활민원 발생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맞는 내용입니까?

잘못 판단하셨지요?

지금 계속해서 번영회라던가 기타 주민들이 계속 반대의견을 집행부에 문서로 접수시키고 있는 과정에 이것은 판단을 과장님이 잘못하신 내용이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기 이전에,

○ 李洙現 委員 :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장황하게 대화 양돈단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런답변은 수차에 걸쳐서 본위원이 다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까? 잘못된 내용입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사업주관 부서로서는 걱정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 李洙現 委員 : 사업부서로서는 적당하게 판단을 했지만 이 내용에 주민생활민원 발생우려가 없을것임을 참조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셨지요? 잘못 생각하셨으면 잘못 생각하셨다고 답변하십시오.

○ 畜産課長 鄭義秀 : 예. 알았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이게 지금 뭡니까?

친구한테 편지 보내는 내용입니까? 공문서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지금 축산과장이 산업과장한테 농지전용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서 입니다. 공문서위조예요. 허위공문서 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허위공문서를 작성해가지고 협조요청을 해놓고 지역주민들한테는 협의도 없이, 상의도 없이 이런사업을 계속 추진합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추후에 확인할수 있도록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禹康鎬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다음은 농지관리 위원회가 확인서 내용을 보면 본 신청지에서 2.5km이내에 주거하는 농가는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 양돈단지 신청지 후보지에서 약 1.7km는 직선거리가 아닙니다. 찾길로 따라서 1.7km지점에 노강환씨의 여섯주택이 엄연히 있습니다. 본 위원회 직접 거리측정 한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신청지에서 2.5km이내에 주거하는 농가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허위공문서 입니다.

지금 노강환씨집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와 직선거리로 따지면 불과 300~400m 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돌아서 찾길 따라서 내려오는 길이 1.7km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세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저희가 추진된 과정에서 주택지와 거리관계는 사실상 도보로 진행을 못해보았고 항상 차량으로 움직였는데 차량의 미터상에 사업장

후보지로부터 제방을 다 지나가고난 다음에 입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업장까지 거리가 측정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다음 96년 3월 5일 대화면변영회장이 평창군수앞으로 대화 양돈단지조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줄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문서로서 이미 집행부는 95년 12월 이 사업을 확정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안하고 협의도 없이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과정에 주민들은 그 내용도 모르고 사업설명회를 해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기가막힌 얘기가 아닙니까, 순진한 주민들이 협의도 없이 계속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사업자하고 집행부하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모르고 이제 사업설명회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시범양돈단지 견학계획서를 보면 참석인원에 주민, 사회단체, 직능대표해서 평창군의원 이수현외 33명이 다녀온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창군 의원 이수현이가 여기에 다녀온 사실이 없어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바쁘셔서 참석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런데 왜 참석한걸로 서류를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합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계획서입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다음 자료 351페이지를 보시면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견학실시 내용에 대한 출장복명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방축산주사 김봉기 해서 올라온 출장복명서에 여기에 그래도 여태까지 엉터리 거짓말만 하던 이 공문서 다 빼놓고 가장 정확하게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출장복명서가 가장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양돈단지내 사육시설은 방역관계상 견학을 못하였음, 분뇨처리 시설라인은 단지장의 안내와 설명 및 주민질문으로 충분한 이해가 되었으리라 사료됨. 그리고 보면 대화면장과 대화면영회장은 주민의 의견이 어렵겠다는

전화가 있었음,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화면장과 대화면면영회장, 그리고 본위원, 이사님들은 다 대화지역주민들의 종합된 의견을 수렴해서 반대를 하는것이지 어떤 개인의 자격으로 대화양돈단지조성사업을 반대하는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서도 저도 확실하게 반대의사를 밝힐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자격으로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 하지마라, 해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 확실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출장복명서고 무슨 반대의견서 제출이고 관계없이 계속해서 평창군수하고 축산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공문서 내용이 다 확인이 됩니다. 평창군수가 지시를 안했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지시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들어나고 있습니다.

양돈단지 사육시설 방역관계상 견학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견학을 못한 이유가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대단위 양돈장은 출입을 못할 정도로 차단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수인의 사육시설내에 출입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李洙現 委員 :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방세 세수증대, 도축세 2,279만원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한심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약 30억씩 지방세가 징수되는 생수공장 같은것도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사업을 못하는데 고작 2,200만원때문에 지역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러한 양돈단지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96년 6월 11일날 대화면번영회에서 대화양돈단지 설치 반대의견을 또 제출 했습니다.

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내용을 군수결재 까지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 한다는것은 95년말부터 계속 군수한테 보고가 들어가고 있는 상

태입니다.

6월 14일날 대화면번영회장 이근형 해가지고 평창군수가 반대의견에 대한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수결재 까지 한 사항입니다.

현대식의 분뇨처리 시설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역주민과 불화가 없도록 사업자와 연계성 등 방안을 찾고 있으며 이와같은 사항이 어려울시 사업계획을 재 검토할 것이니 우리군 축산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 검토하겠다고 또 그랬습니다.

평창군수가 이 사업을 지역주민과 협의가 안되고 불화가 있으면 사업계획을 재 검토 하겠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도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 과장뿐만 아니라 평창군수도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 하시지요?

문서상 계속 나온 애깁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집행부에서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주어진 사업만 진행하겠다는 뜻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럼 지역주민과 계속 불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보면 사업계획을 재 검토 한다고 공문서상에 적혀 있는데 계속 추진했는데 거짓말 한 것이 아니에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는 사업추진 농가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항으로 추진을 했고,

○ 委員長 禹康鎬 : 축산과장님께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그다음 다시 재 검토 하겠다는 '95년도 부터 계속 이어진 그런 질의 답변이거든요. 그럼 실지 집행부에서 이수현 의원님께 질의하신 종합의견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정확한 이유를 답변하시고 그다음 군수가 시켰는지 안시켰는지 그것 답변하시고 두가지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것을 안 물어 봐도 되는데 원론적인 얘기로 계속 되잖아요.

그다음 답변하실때 답변이라고 하세요. 말씀이 아니고 답변입니다.

그렇게 두가지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본 사업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한 농가 자율사업입니다.

○ 委員長 禹康鎬 : 과장님! 원론적인 책에 있는 그런식의 답변 말고 정확한 답변, 요구하는 답변이 뭔지 하시면서 왜 그런식으로 자꾸 답변하세요?

요구하는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사업참여는 사업참여농가가 농가차원에서는 많은 부담을 들어가면서 사업장 후보지의 토지가 확보된 상태이고 그리고 개별법령상에 의한 인허가 절차가 계속 진행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어떠한 불가사유가 분명히 나온다면 그것으로 사업이 중단의 요소가 성립이 되겠지만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개별법령상의 인허가를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법에 의한 절차진행사항이

○ 委員長 禹康鎬 : 과장님 주민의 동의서는 법적으로 필요없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민이 반대하는 지방자치는 할 필요도 없어요. 이수현 위원이 질의하시는 요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도록 답변해 주시면 간단 하잖아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다음으로 군수님의 지시는 대화양돈단지는 기필코 추진 하라고 말씀하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시사항에 양계, 양돈사업은 육성하라는 말씀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양돈단지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단계를 포함해서 군에 최소한 3개소 정도의 양돈단지를 육성하는 계획으로 우리 축산과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禹康鎬 : 아까 그렇게 답변 하셨으면 이수현 위원님이 그렇게까지 질의를 안하셨을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수 있는 답변을 자꾸 원론적으로 답변하시니까 질의가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 李洙現 委員 : 그다음 자료 361쪽을 보시면 번영회 및 대화시내 주민 의견에서 축산단지 후보지 선정시 대화주민과 사전협의없이 선정된것에 대한 불만표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화지역주민과 사전협의를 없었다는 것은 여기서도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도 농지전용허가 요청시에 축산과장이 산업과장한테 보낸 공문내용에는 주민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서상으로 모든것이 증거가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영뚱한 답변만 계속 하시니까 질의가 길어지는것 아닙니까?

그다음 축산단지 사업설명회개최결과, '96년 6월 4일은 지역주민 번영회장의 48명이라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수개발을 선행한 후에 주

민 관청 등 협의후 사업시행 하겠다고 하고 또 아무런 조치도 없이 주민과 협의도 없이 사업은 7월 1일날 확정을 했어요. 6월 4일날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또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7월 1일날 확정 승인을 했어요. 계속 주민들은 도외시 하고 집행부가 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다음 보면 또 놀랄 일입니다.

96년 8월 28일 전결은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축산단지조성사업 추진대책 협의회 개최라는 내용이 있어요.

주민들은 계속 반대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추진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일체의 비밀로 부치고 대책협의회를 하고 있어요.

이 대책협의회를 '96년 8월 28일날 군수께서 대책협의회를 개최해서 빨리 양돈단지 조성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었나요?

○ 畜産課長 鄭義秀 : 개별적인 지시사항은 없습니다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또는 해결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대책협의회 개최 결과를 보면 장소가 단지대표 자택이에요.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업자의 집에서 비밀리에 대책협의회를 개최한 이유가 뭘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비밀리에 사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하시기 이전에 계속해서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사업장을 떠난곳에서 전체참여 농가를 모시기는 문제가 있다고 사업장 대표가 말씀을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 李洙現 委員 : 대책협의회 내용중에서도 주민동의를 받고져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지하수맥을 조사하였고 해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식수를 해결하여도 사업을 반대한다는 무조건적인 반대에 접하고 있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맥을 조사하였다라는 것은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개발공사나 어떤 지질학계의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의뢰한 근거도 없고 결과통보서도 없고 그냥 내용만 타이핑 해가지고 약 200t 가량의 수맥 4개소를 발견하였음, 이것을 누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도 지하수맥을 조사하였고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접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민들이 지금 모조건 반대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을 일일이 듣다보면 세월도 끝도 없을것 같아서 지금 계속 혼자 문제점만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내용을 보면 주민동의서 없이 국변절차이행을 진행을 요구함, 서류 진행중 주민동의서 및 이해 설득은 계속 하겠음, 이라 해놓고 주민동의서는 고사하고 협의도 한마디 안하고 있어요.

이것이 8월달이였습니다. 12월달 접어들도록 협의도 한번도 없어요. 그러고도 주민동의서를 계속 받겠다고 그래놓았어요. 좋은말을 다 써놓았어요.

여기에 보면 관련부서 의견 해가지고 동사업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는 주민동의서가 필요하나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 이행하겠음, 이래 왔습니다.

주민동의서가 필요하나 주민동의서는 받지않고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어요. 우선 사업은 해야 되겠으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건 말건 주민동의서가 필요한 내용을 알아요.

건설과에서 주민동의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평창군수가 지시를 계속 독려를 하고 지시하는 사항이니까 하는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주민동의서가 필요한 사업을 동의서도 받지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관련부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절차를 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겁니다.

거기에 보면 국변과 농지전용 협의가 된다 하여도 국변공고시 20일소요 주민동의서가 없을시 또다시 주민반대가 예상됨, 이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주민 반대가 분명히 있을것을 예상하면서도 관련부서에서 계속해서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는것은 군수 지시사항 이니까 계속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부서 축산과장님한테도 평창 군수가 계속해서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특별한 지시가 없다고 답변을 하실수 있습니까? 관련문서상 증거이다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저혼자 너무 질의를 오래 하는것 같아서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만, 곧 끝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화양돈 조성단지에는 이미 환경성 검토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거의다 진행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임 문제는 본위원이 지금까지 확인한대로 축산과장을 비롯한 관련부서 과장, 평창 군수에게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확인한바와 같이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에 경악을 금할수 없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히 잘 못된점을 지적했고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번영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반대민원을 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대화양돈 단지조성사업이 집행부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는 현실이 놀랍고 또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오늘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 기회가 끝나면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의회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재조사를 할것이며 현재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대화면번영회 및 각 사회단체 모두에게 사실대로 통보하여 그 책임을 묻도록 할것이며 만약 양돈단지 조성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면 대화면민과 함께 실력저지 할것을 이차리에서 분명히 밝히면서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禹康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委員 :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委員長 禹康鎬 : 네.

○ 李洙現 委員 : 참고로 우리 평창군수의 '97년도 시정연설 내용중에 축산단지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서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한점 등 반성의 아쉬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도 시정연설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반성을 했으면 시정을 해야지요. 반성만 하면 뭘합니까 과장님 이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禹康鎬 :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李慶鎭 委員 : 이경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초지조성을 많이 하는데 초지조성 완료신고서에 보면 붙임 1,2,3 해서 초지조성 소요물자내역서 1부, 초지조성지 실측도면 1부, 사진1매, 소요자재구입증빙서 사본 각1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것이 문제로 볼수 있는가 하면 초지조성실측도면에 제출된 서류를 여러건이 동일한테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을 동시에 요구를 하셨는데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성격상 또 규정상 현황측량만 하면 될것 같은데 경계측량을 병행 실시 함으로 해서 측량비를 71만 7천원정도 불필요한 금액을 이 금액에 상당한 부분,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부분은 필요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하는데, 경계측량을 성과도로 붙여야 하는 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畜産課長 鄭義秀 : 이경진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실측도면은 허가된 면적과 경계점을 명확히 산정확정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런데 과장님 임의로 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규정이 있으면 제시를 하세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초지조성사업 실시요령이 농림부에서 실시된 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 요령좀 보여주세요

경계측량 성과도를 붙여야 된다는 여러 가지 성격상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황측량으로서 충분히 가름할 수 있고 경계측량은 굳이 필요없고, 행정편의주의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규정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규정을 요구하니깐 규정을 보여주십시오.

○ 畜産課長 鄭義秀 :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경계측량의 당해 필지의 전 면적이 허가조성되는 경우에는 인접 타 필지의 경계침범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경계측량이 되고 있고 현황측량은 당해 필지면적중 일부분이 허가되고 잔여부분이 있을 경우에 허가된 면적의 산정을 위해서 현황측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제가 판단하기에 직접 제가 초지를 조성해 보지는 않았습니니다. 경계측량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전필지를 하는 경우에 경계측량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경계측량은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군의 인허가라던가 사업비를 청

구하는데 경계측량은 필요없습니다.

제 생각이, 제 주장이 맞는지 안맞는지 역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이라는 것은 너무 임의성으로 하셔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규정을 한번 보여주시고 규정이 도착되기 전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禹康鎬 : 이경진 위원님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 규정을 가지고 오세요.

○ 李慶鎭 委員 : 그리고 규정이 오기전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 허가증, 허가조건 1,2,3,4,5항 초지조성 완료후 10일이내에 목장용지로서 목적을 변경하여야 한다, 변경을 안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시는 것인지, 또 관리를 하셨는지, 몇건이나 하신 것이 있는지, 다 하셨는지, 관리한 대장이라던가 과정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 畜産課長 鄭義秀 : 허가난 면적에 대한 초지조성이 완료되면 완료확인서를 축산과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초자료로 해가지고 우리 지적과에서 지적공부정리를 하게 됩니다.

○ 李慶鎭 委員 : 지목변경이 확인이 되셨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있는데,

○ 李慶鎭 委員 : 아니 확인을 하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확인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 畜産課長 鄭義秀 :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럼 올해 대표적으로 여러건을 하셨는데 이 서류에 보면 8만 m²가 넘는 건수가 있는데 그럼 8만 m² 이상이 되는 건수가 몇건수 있습니까? 10,000단위 이상된것이 확인된 내용이 있으면 지금 볼수 없습니까?

제가 미리 확인을 해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그부분을 못했는데 계속 확인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부분을 분명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1만 m²라면 통상 6

ha니까 초지조성사업의 허가는 역시 1ha 이상의것만 허가하기 때문에 전면적이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러니까 지목변경을 과장님이 이 서류를 보면 지목변경을 하여야 한다, 안했으면 특별한 제재를 취하셔야 하고 또 독려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관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확인을 1만 m²이상 되는것이 날짜가 10일 이내에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몇가지만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관리대장이 있으십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지목변경 관리대장은 비치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초지관리대장이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초지관리를 해서 허가를 했으면 10일이내에 이것은 분명히 지목변경이 돼야 하는데 되었다, 안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해서 사후 관리대책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물론 챙겨야지요.

○ 李慶鎭 委員 : 그런 부분을 챙겼습니까, 안챙겼습니까? 지금 챙겼으면 말

로만 챙기시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류에 의해서 무슨 대장같은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대장정리 할때에 지번, 지목, 지적이다 표시가 되니까,

○ 李慶鎭 委員 : 아니 현황이 있으니까 1만m'이상 지목변경한 현황, 아니 허가 받은 현황이 있으면 날짜에 따라서 지목 변경한 날짜를 우리가 추적해 볼수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두가지만 확인될수 있겠끔 해주세요.

○ 畜産課長 鄭義秀 : 금년도 허가분은 아직까지 사업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과년도 사업분에서 추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네.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禹康鎬 : 관련서류 제출과 위원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時25分 監査中止)

(14時41分 監査繼續)

○ 委員長 禹康鎬 : 좌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薰 委員 : 이상훈 위원 입니다.

먼저 '95년도 젓소경쟁력제고 사업중에서 발생한 봉평면 확회중씨 축사철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축사철거로 인한 본인의 경제적 손실은 말할것도 없고 특히 어려운 환경속에서 그나마 사업비 지방보조비로 900만원을 지원해준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에서 평창경찰서에 하천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광씨에게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는데 벌금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내용은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회중씨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서 자료에 보니까 10월 31일 4차에 걸쳐서 축사철거 연기조치를 해주었습니다. 현재 대체 축사신축이 완공되었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 그당시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러

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농촌에 살고있는 궤씨한테 경제적 부담은 가지 않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업무수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화 양돈단지 사업은 대화주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이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젓소경쟁력 제고사업중 봉평면 궤회중씨 축사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벌금이 300만원 부과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지원해가지고 톱밥발효운동장 축사신축에 대해서는 100평 규모로 현재 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금년도 사업분은 시행초기부터 본인의 밭에다가 농지전용 신

고절차를 분명히 걸친다음에 건축신고도 하고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면사무소에 건축물대장 등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완료보고서는 아직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대화 양돈단지사업 계속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감사시간에도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의는 끝났다 하더라도 절차상 20일간의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고기간을 걸친다음에 본군 건설과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하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업주관부서에서는 관망하고 있습니다.

○ 李相薰 委員 : 그리고 궤회중씨 벌금 부과액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사람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 모릅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아닙니다. 벌써 사건발생한 이후에 바로 법원으로부터 판결처분이 나가지고 벌금 300만원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相薰 委員 : 300만원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李相薰 委員 : 이상입니다.

○ 金鍾永 委員 : 김종영 위원 입니다.
초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75년도부터 많은 초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이 초지조성 내용을 보면 물론 지역사람도 많이 있고 외지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초지관리가 아주 상태가 안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도 여러가지 소값하락등 문제에 따라서 발생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만, 그러나 현재 볼때에는 관리가 형편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많이 있는데 한가지만 그중에서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지대학교 초지가 있는데 여기에 제출서류를 보면 한우가 25두를 사육한다고 그랬고 초지상태는 중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우가 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금년도 10월달중

에 읍면을 통해서 초지법 절차에 의한 정기실태조사를 집계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에 나타난 감축사유 현황은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 보고서 내용과 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金鍾永 委員 : 이것은 하나도 없고, 한우가 한마리도 없고, 초지는 10년전부터 관리를 안해서 아주 부실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여러가지 계통을 통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 상지대학교 초지는 횡계2리에 있는 군유지 초지인데 관리를 안한줄 알고 있지요?

이렇기 때문에 이 초지는 직권으로 그냥 해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사유지에 조성된 초지가 아니고 군유지에 조성된 초지이기 때문에 초지법 절차에 의한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거치지 않으면 이 사항은 시정명령을 발하고 그 시정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경우에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 규정상에 대부받은 토지를 성실하게 목적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조항에 적용해가지고 별다른 조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럼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상지대학에서 자기들이 상지대학 축산대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목상 가지고 있는 초지지 사실 소를 기른다거나 와서 실습지로 사용한다거나 이것은 전부 허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것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를 하실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하실겁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별도조사를 해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이것은 조사를 즉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잘알겠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劉燾文 委員 : 유돈문 위원입니다. 시간이 워낙 많이가서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수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와서 송어장 인허가를 축산과에 신청하면 축산과에서는 적합하면 송어장 허가를 내줍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송어장은 허가사무가 아니고 신고사무입니다.

○ 劉燾文 委員 : 아니 송어장이 신고사항으로 되었다고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劉燾文 委員 : 일단 유수전용허가를 먼저 득한 다음에 축산과에서 송어장 허가를 해주는지 제가 그것을 물어본겁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물을 이용한 유수인용허가, 그다음 그땅이 농지라면 농지전용허가 내지 신고, 절차를 걸친다음에 본인이 계획된 시설을 끝내고 어업을 개시하겠다는 내용의 어업신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劉燉文 委員 : 그러니 제일 중요한것은 우수전용허가가 중요한것 아닙니까? 물을 쓰라는 허가가 아닙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劉燉文 委員 :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劉燉文 委員 : 알겠습니다. 나중에 건설과 소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물어본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축산과에서 평창군 송어장이 몇개나 됩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지금현재 29개입니다.

○ 劉燉文 委員 : 그런데 어떻게 환경과에 환경오염때문에 했는데 자료가 20개라고 나와있는데 한 단체장 밑에서 통계가 왔다갔다 이래요. 건설과에서 확인을 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86쪽에 보면 '96년도사업중 10월말까지 미집행된 사업현황인데 양돈단지 축분발효시설, 4억 2,000만원 양돈단지 사업과 병행추진하라고 그랬는데 지연시 사고이월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이 되지 않았을때는 사고이월을 하게되면 양돈단지것은 '95년도 사업이니까 반납하는 문제가 생길텐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양돈단지 사업은 2년차에 걸친 사업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착수된 사업은 96년도말까지 완성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사업비 자체가 연차별로 분할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양돈단지 사업과 연계한 분뇨처리시설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예산확정을 얻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년도까지의 이월은 가능합니다만, 이 사업은 독립된 사업이 아니고 양돈단지 사업과 연계되어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돈단지 사업의 시행여하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알겠습니다.

다음 축산물등급판정시설 계약서류 일체 하고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연합회 하고 계약을 했는데 현재까지 시행된사업 성과도, 그다음 시행된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성과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더 부탁드립니다 김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상지대학교 초지문제 조치후에 의회서 서면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 委員長 禹康鎬 :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李慶鎭 委員 : 아까 자료 규정집 가지고 온것이 있습니까?

경계측량을 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처리되어서 주민들이 이중 피해가 없어야 하는데 정확한 규정이 법규에 나와 있는것이 없는것 아닙니까?

지적법에는 측량법만 있을뿐이지 초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경계측량하고 현황측량 두가지를 반드시 해야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없으면 한번만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첨부되어 있는 서류는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는것 아닙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아니 제가 알고있기로는 수개의 필지를 신청한 경우에 어떤필지는 필지 전면적이 허가대상 필지가 있고 또 어떤필지는,

○ 李慶鎭 委員 : 아니 전면적이 되던 반면적이 되던간에 경계측량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한 법적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법적인 근거라고 하기 보다는 통상적인 예가,

○ 委員長 禹康鎬 : 축산과장님! 이경진 위원님! 아까 그 규정집을 제출하라고 해서 그 규정집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상적인 예가 아니고 규정집에 의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사업시행전에 측량을 해야한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비목내역에도 측량비 비

목도 동시에 예산수반이 되어 합니다.

○ 李慶鎭 委員 : 아니 측량은 하는데 현황측량으로서 모든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경계측량까지 이중부담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겁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현황측량만으로는 지적경계 표시가 안됩니다.

○ 李慶鎭 委員 : 아니 초지조성을 하는데 지적경계 표시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한 이유를 답변해 보세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인접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니거나,

○ 李慶鎭 委員 : 자기소유가 아닌것은 자기 개인적인 재산권의 문제지 인가나 허가나 그것으로 해서 보조사업이나 용자를 받는데 꼭 필요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그로 인해서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소지도 사전에 검토되어야 하고,

○ 李慶鎭 委員 : 차후에 그것은 개인 사유권, 권리를 주장하는 지주의 개인적

인 문제지 허가를 해주는 군의 입장에서는 굳이 경계측량을 시킬필요가 제가 보기에는 있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 하시는데 하시면 하실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규정이 있으면 애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초지조성 허가시에는 측량도면을 붙여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착수가 되어서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 李慶鎭 委員 : 착수과정에서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막연하게 시키는 것이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사업착수시에는 허가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것좀 보여 주십시오

○ 委員長 禹康鎬 : 이경진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추후에 축산과에서 확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니까?

축산과장님, 정확한 답변, 정확한 서류 제출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時05分 監査中止)

(15時15分 監査繼續)

○ 委員長 禹康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委員 : 지금 2건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측량문제에 대해서는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 둘중에 하나만 하는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서류는 공교롭게도 중복으로 현황측량과 경계측량 2건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목변경은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과장께서는 관리를 하시고 마무리 단계까지 잘 관찰을 하셔

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95년도에 허가된 사항들 중에 여러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열흘 이내에 지목이 변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지목변경된 사항은 단 2건밖에 없습니다.

이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계와 축산과에 업무협조가 잘 될수 있게 행정상의 절차이행에 모순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잘알겠습니다

○ 委員長 禹康鎬 : 보충질의 하실 의원안계십니까?

○ 李洙現 委員 : 제가 한가지만 지금 제출이 늦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313쪽에 보시면 군수가 사업계획변경을 도지사에게 보고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12월 28일자예요. 그런데 이당시에 지금 토지사용승락서를 확인해보니까 김희정이가 토지사용승락을 한 모양인데 인감이 1월 10일자예요 12월 24일 이전에 서류가 다 되어야 하

는데 1월 10일자 인감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이전에 토지사용승락서 다 첨부되어가지고 사업계획 변경통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감이 1월 10일자로 되어 있어요. 이제 하두 입이 써서 이제는 대화양돈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더이상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禹康鎬 :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山林課 所管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산림과장 손영택

(산림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禹康鎬 : 감사대상 사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화산업개발의 '95년도 불법골재반출 양에 대하여 이미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확하게 다시 추정할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요구했는데 전혀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네. 제출서류 13 페이지에 저희가 주장을 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추정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추정금액이 수량이 32만2,021누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2월 16일 매각한것이 3,200만원하고 '96년 2월 25일 235만원하고 합쳐서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 의해서 '96년도 2월 16일 이명우에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30m³누배를 계약체결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산출을 해가지

고 토석계산량이 별표 사본으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2,021누배는 불법으로 사용된것입니다. 그것은 96년 5월 25일 저희 보호계장이 현지에 출장을 해가지고 사실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 사실한 내용이 그 22,021m³이 어디로 수급이 되었나 하면 대암레미콘이 14,000, 현림레미콘이 2,608, 유성건설이 1,800, 삼호건설이 2,100, 대화 신리부력이 1,000, 기타가 162로 해가지고 5개회사에 납품이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 적발한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적발한 근거는 당시 납품도 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수량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량을 첨부를 해가지고 사건 송치된 결과 벌금 1,000만원을 물게되고 이 수량이라는것은 그 이외에 더 팔은 관계는 확인 안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확인할수 있는것은 납품된 납품증명서 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한것으로서 뒤에 첨부된 계산서와 토석계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온 것이므로 그 이상의 폐석을 부정반출했다거나 그런것은 적발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 李洙現 委員 :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22,021누배에 대한 량을 본 위원이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사용된 국도, 군도 지방도 전부다 본 위원이 이미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들어갔으니까 건설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설계도면상 충분한 양을 얼마든지 확인할수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징료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납품증명서 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해서만 확인된 양은 사실 병산의 일각입니다.

이미 불법반출된 골재를 다시 측정할수 있는 근거를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 조사를 한 결과 어떠한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적발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 수사를 하던지 어떠한 증빙

서류에 의해서 세무서라던가 이런 증빙서류에 의해서 이 5개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 납품된 사실이 있다면 추적 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과장님 의지는 좋으신데요. 이미 2개 레미콘회사에 들어간 량이 10분의 1도 안된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설계도면이라던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산출될수 있는 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양을 파악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山林課長 孫榮澤 : 있습니다.

추적을 하겠습니다. 추적조사를 해가지고 사실대로 적발이 되면 추가로 입건을 해가지고 다시 송치를 해서 벌금을 물릴것은 물리고 저희들이 추징할것은 추징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것 같

은대 '95년도에 불법 반출량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셔서 꼭 재 추정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알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상입니다.

○ 劉燉文 委員 : 유돈문 위원 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의 일환인 실천사항 항목중 산림과의 소관율, 읍면별 계획중 미탄면 주민소득사업인 산초나무 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계획에 대하여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지역특화사업육성 시책사업으로 솔잎혹파리 피해목을 군 직영으로 벌채 및 매각 계획이 현재까지는 민간인에 위탁을 해가지고 벌채를 했는데 이것을 군 직영으로 벌채매각 한다음 벌채지에 조림수로는 고로쇠나무, 산초나무, 자작나무 등 경제수 조림으로 주민소득을 증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능한지 이사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산초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제가 45회 임시회때 유돈문 의

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4ha에 6,000본을 미탄면 울치리 산1-3번지에 식재해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체 25ha 중에서,

○ 劉燉文 委員 :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질문드린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군수님 공약으로 읍면별 사업이 '97년도 미탄면에다가 산초나무 단지 조성을 해서 주민 소득사업과 연결하겠다 라고 나와 있는것을 질문드렸습니다.

그럼 그것이 산림과에서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45회 임시회가 왜 나오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지역개발과에서 조림사업 경영안 방안을 저희군 경영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성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당시 11월 13일날 협조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평창, 미탄면에는 산초나무, 돌배나무, 드릅나무, 과일나무를 식재하

고 방림, 대화, 봉평에는 업나무, 주목, 고로쇠나무, 자작나무를 식재하고, 용평진부, 도암에는 전나무, 업나무, 주목나무, 고로쇠나무를 식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에는 균유림에다 100정보를 2억 4,3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식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협조가 왔길래 저희는 지금 조림사업을 중앙계획에 의해서 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계획과 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100ha라는 것은 도에서나 중앙에서 공급되는 묘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 구입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종자를 파종해가지고 묘목을 생산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식재를 할 그럴 계획인데 '97년도 균유림의 100ha 식재중에 미탄면에다가 산초나무하고 돌배나무, 드릅나무를 식재할 계획은 지금 이 계획하고 저희 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추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ha 식재는 저희 산림과 입장에서는 실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劉燾文 委員 : 지역개발과의 감사자료에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만 개발과장은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과의 답변을 들으라 해서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엄청나게 잘못되었습니다.

'97년도 울치리 산1-3번지 25ha정지작업을 한것을 내년도 97년도 묘목을 심어서 3년을 지나 5년차에 가서는 소득을 증대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 한 것입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으로 솔잎혹파리 임목벌채를 군 직영으로 해가지고 매각처분한다, 그 뒤에 경제수를 심는다, 이런것은 산림과장님 답변하세요.

○ 山林課長 孫榮澤 : 이 문제도 당초에 경영수의 사업 추진 일환으로 지역개발과에서 군 세입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인력이 라던가 예산이라던가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매각을 할려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역개발과에서 경영수익을 올려서 군 세입을 잡겠다고, 그러한 뜻에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승환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어려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인력 이런문제하고 경계침범이 되었을때에는 직영으로 하게되면 저희 산림공무원들이 책임을져야 합니다.

또 그에 따라 사유림과의 경계에 있어서 측량비가 많이들고 거기에 작업인부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때문에 산재보험에 군수님 명의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벌채 작업시 인부가 사고를 내면 군수님 하고 저하고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또 작업인부들이 기계톱을

소지하고서 하루에 일을 하게되면 15만원내지 20만원을 요구를 하고 받게 되는데 우리 단기간은 별목인부가 5만3천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것도 맞지도 않고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면 감독공무원이 거기에 나가서 2-3명이 매달려서 처리를 해야되고 작업인부 관리도 그렇습니다.

○ 劉燾文 委員 : 됐습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저희 계획은 상당히 실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금년도 아니면 내년초에 5내지 10ha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임목으로 처분하는것 하고 직영으로 하는것 하고 소득분석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 劉燾文 委員 : 지금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신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어렵더라도 강행을 해보시겠다는 얘기지요?

○ 山林課長 孫榮澤 : 아니 시범적으로 5정보내지 10정보를 해가지고 정밀하게

소득분석을 해가지고 지휘부에 보고를 한 다음에 어떠한 결정이 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劉燾文 委員 : 그대신 그밑에 조림수도 여기 자료에 나온것을 보면 고로새나무, 산초나무, 자작나무를 경제수로 심는다 이런것은 묘목으로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안되어 있습니다.

○ 劉燾文 委員 : 그런데 어떻게 시범이 됩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아니요. 조림이 아니고 벌채 애깁니다.

직영으로 벌채하는것을 얘기합니다.

○ 劉燾文 委員 : 벌채한뒤에 조림으로 심는다고 했어요.

어려워서 잘 안되는것을 강제로 하는 이유는 됩니까? 어느분의 특별지시가 있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그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소득에 연계가 되어서 군 세입을 중대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단 임목매각 처분보다 직영을 하면 돈이 1정보에 1만

원이던지 100만원던지 벌수있을것 같으니까 이렇게 시도하는 겁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 劉燾文 委員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相薰 委員 : 이상훈 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시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산림병충해 방제 약품을 구입했는데 이 문제 하고 또 94년도에 방렴면적 6리에 경지정리 채토장허가 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약품으로 감사자료를 보니까 포스팜액제, 다수진입제등 비료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현황이 기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약을 얼마나 어느 메이커에서 얼마나 사용했는지, 현황을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출시에 각 메이커에서 구입한 구입 명세서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증빙

서류 일체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간주사 사업은 금년도에 3,500ha 포스팜 액제 50%입니다.

이것을 30,800ℓ를 구입을 했습니다.

산림용으로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특별히 제조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는 이런 약품이 없습니다.

일정부에 8.8ℓ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천공기라고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고 주입기로 해서 주사를 놓아가지고 방지하는 사업인데, 물량구입은 포스팜액제 50%를 30,800ℓ를 현물 보조가 되어가지고 산림청에서 내려와서 금년 5월달에 저희들이 인수한것입니다. 그외에 다수진입제하고 질소질 비료는 지면약제 살포는 다수진입제로 해가지고 이것은 노란색깔에 입제로 되어 있습니다. 입제로 되어 있는것을 분무기에 넣어가지고 지면에다가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엽면시비는 항공기에서 분발하는 것인데, 요소로서 질소질 비료가 46%가 포함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그 요소를 마그네슘하고 타서 신초의 생장 촉진과 나무에 피해 회복을 위해서 5내지 6번까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 李相蕪 委員 : 방림면 계촌6리 경지 정리 채토장허가를 해서 복구하는데 설계도하고 준공검사 당시에 현지 출장 나온 각종 서류를 보니까, 하자가 없는 걸로 판정이 되어가지고 농지개량 조합에 다가 준공검사 허가를 해주었는데 농지개량조합에 복구비를 2,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이 된것입니까? 물론 준공검사는 끝났으니까 지출이 되었겠지요.

○ 山林課長 孫榮澤 : 예,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相蕪 委員 : 설계 및 감사자료를

보니까, 복구공종으로 씨를 뿌리고 나무 심기를 5,000본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등산겸해서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날짜는 잘 기억이 안됩니다만은 6월 29일쯤 식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는 나무라는 것은 보통 봄에 식목을 해야 하는데 한여름에 식목을 해서 대부분이 다 고사를 했어요.

다 말라 죽고 풀씨도 거의 시원치 않은 상태고 그런데 지난해에 폭풍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심했을때에 산사태도

나고 이런 예가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 으로서는 준공검사를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 주었길래 토사유출이 되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지난해에 그 사람들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용벽을 약 1m 52정도 용벽을 쳐놓았는데 이것은 하나 마나 입니다.

그 밑에 도수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금년에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런데 명년도 또 장마가 진다든지, 폭우가 쏟아지며는 이일대에 토사유출이 또 될것 같은데 말이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예, 알겠습니다. 사실 방림면 계촌 6리 경지정리 채토장에 대한 허가 복구는 완료되었습니다. 원인자 복구로서는 책임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준공검사가 8월 30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 해가지고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조림목이 말라 죽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묘목을 확보해가지고 식재가 가능 합니다.

다만, 폭우 피해시라든가, 산사태로 인해서 농경지에 토사유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한 원인자를 설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강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李相薰 委員 : 과장님, 내년도에 원인자 농지개량조합이 되겠지요. 명년

도에 봄에 복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94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94년도 겨울에 계촌 6리 뜰에 경지정리 하기 위해서 객토한 투자인데 '94년도가 지났고 '95년도가 금년도가 거의다 지났 습니다.

저는 계약 규정을 잘모르는 사람이기 때 문에 그렇게 5,000본을 심는다든지, 풀 씨를 뿌리겠끔 되어 있으며는 준공검사 당시에 사항을 판단해가지고 복구가 제 대로 안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으면 복구비를 내주지 말아야 하는데 복구가 잘 된것으로 판단해서 준공검사를 다해주고 내년에는 무슨 예산을 가지고 복구를 할것인가요?

그런 예산이라도 있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제가 현 장을 답사를 못해가지고 느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은 저희 직원 서태일씨라고 그 직원이 복구에 대한 준공검사를 했는데, 준공검사라는 것은 당초 설계하고 실행한 설계하고 맞아야지만 준공검사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허술하게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훼손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 단은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李相薰 委員 :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산사태가 떨어진데는 적어도 30m내지 40m 높이인데 그 일대가 전부 훼손을 했거든요. 객토를 하느냐고, 거기에 남은 수목은 대부분이 말라죽고 더욱이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산사태가 떨어지고 거기에는 지금 임시 조치로 옹벽을 2m 기준으로해서 쳐놓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복구가 안된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업비는 수해복구사업비로 옹벽을 붙인 것인데, 원인은 산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닦아 놓았는데 거기에도 배수시설이 안되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운동장 같은 곳에서 고여있던 물이 산으로 내려오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밑에 지대

가 낮은 눈에는 흙이 내려오고 그래서 농민들이 몇가구 안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곤역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은 해서 돈을 벌고 지방의 농민은 비만 오면 사태가 지고, 거기에서 일을 해야하는 그런 부당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도 이지구에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이문제는 제가 이 서류를 본결과 8월 31일 준공검사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2,150만원이 적지 복구비가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돈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원인자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복구비 2,150만원이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慶鎭 委員 : 이경진입니다.

먼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문서를 어떤 경우에 보완을 하고 어떤 경우에 반려를 시키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그 문제를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 山林課長 孫榮澤 : 보완은 저희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2회까지 보완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법령이라든가, 예규 지침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또는 현장에 산주가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훼손지에 가서 훼손지 구역 표시를 해 놓아야 하는데 측량을 한다음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려는 2회 이상 보완 요구를 해가지고도 산주나 신청자가 아무런 회답이 없고 또 현장이라든가,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때 2회 보완을 한다음에 3차에 가서 반려를 하고,

○ 李慶鎭 委員 : 나중에 반려가된 서류는 재접수 하면 또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재검토 될수 있는 것이죠?

○ 山林課長 孫榮澤 : 예, 그렇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지난번에 해태 음료에 관해서 여러과에 질문을 했는데 해태음

료에서 사업인수를 받기 위해서 8월 31
일날 산림훼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처리기간이 10일인데 10월 17일날 허가
가 났습니다.

2개월 17일이 소요되었는데 다행스럽게
도 계속 1차 보완, 2차 보완, 보완 보완
하다가 허가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도 상당히 잘하신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산림훼손허가신청 4월 17일
날해서 기간을 10일간 허가처리 해야 하
는데 1개월동안 걸쳐서 계속 보완, 보완
허가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이렇게 보
완할수 있으면 보완해야 하는데 대부분
서류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취하를 했
거든요. 취하를 했는데 몇일있다가 재
접수 되어가지고 처리가 되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서 취하해서 반려, 보류
했던 서류중에서 재신청 되어가지고 허
가 처리된 내용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유서와 내용을 자료로 제출요구를 했
었는데 날짜만 정리가 되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1개씩 물어볼수 밖에 없습
니다.

8월 24일날 접수한 내용중에 처리기간이
9월 9일인데 9월 6일날 개인사정으로 취
하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날 재신청이 되어서 9월
12일날 신고수리를 했는데 이 내용은 보
완시켜도 충분히 될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보완하지 않고 개인 취하를 했
는데 취하는 안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것이
지 강요하신분이 두분이 있는데 당초 접
수되었던 내용하고 2차접수 되었던 내용
하고 혹시 차이점 같은걸 확인해볼 필요
가 있는데 서류가 있으면 보여주세요.

○ 山林課長 孫榮澤 : 별도로 서류를 챙
겨서 의원님께,

○ 李慶鎭 委員 : 전부다 이런 사항들이
입니다. 별도로 챙겨야 할 사항들이 아
닙니다. 여러가지 중에서 대표로 한두
건만 확인이 가능하면 확인을 해봐야 하
는데요.

○ 委員長 禹康鎬 : 지금 이경진 위원께
서 날짜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으니
까 그 부분 일건서류를 지금 준비하셔서
질의내용중에 갔다 드릴수 있도록 해주

시기 바랍니다.

○ 李慶鎮 委員 : 그리고 1월 12일날 산림과에서 제출한 서류인데 당초 1월 12일날 서류를 제출했다가 처리기간이 1월 23일인데 1월 15일날 반려를 시켰거든요 그 내용은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중으로 반려한다, 그래서 그다음에 불과 한달도 안되어서 허가를 했는데 국토이용계획 변경및 취락지구개발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안되어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반려를 했다가 다시 허가를 했는지 그 과정에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었는지 그것도 확인 필요한것 같고, 그다음 8월 9일날 접수해서 8월 30일이 처리기한인데 취하를 했다고만 얘기했습니다. 몇일날 취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사정으로 해서 취하를 했다가 다시 9월 23일날 재신청을 해서 9월 23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취하를 했다가 허가가 난것이 불과 몇일 차이가 안되는데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인데 계속 그다음 접수해서 또 끝까

지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중간에 개인적으로 취하를 시켰는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보완을 시켰으면 될텐데, 처음서류와 나중서류를 보여주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취하했다가 그서류 그대로 제출했는지, 확인이 필요할것 같은데, 당초에 제출하셨으면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데 당초에 제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알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김두경 위원 입니다. 먼저 조림 및 하에작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많이 하셨는데 조림 후 산림과에서 확인점검을 하십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조림지에 대한 확인은 8월 9월달에 저희들이 검목이라 해가지고 조림지에 대해서 얼마나 살았고 얼마나 죽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지적사항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실적이 나와 있습

니다.

○ 金斗經 委員 : 그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예.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 金斗經 委員 : 올해 조림면적이 전부 솔잎혹파리 피해목 지역인가요?

○ 山林課長 孫榮澤 : 그렇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그다음 하예작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하예작업비 ha당 보조비는 얼마입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ha당 보조비가 총액이 30만 5,989원중에 보조가 나가는 것이 18만 3천원이고 60%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40%로 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하예작업을 산주가 하지 못할때 대개 임협에다가 위탁실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山林課長 孫榮澤 : 그렇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거기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저희들이 풀베기 작업을 할때에 조림대장에 의해가지고 96년도 조림할 산주가 누구다, 몇명에 몇ha다 이것을 발취를 해가지고 조서를 만들어서 당신네 산이 금년도에 몇ha의 조림을 했는데 보조가 얼마가 나가고 자부담이 얼마가 들어간다, 그런데 산주인 당신이 직접 할것인가,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시킬것인지 의향을 물으면 산주는 그 가부결정을 해가지고 저희 산림과에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줍니다.

나는 고향에 살고 집이 여기이기 때문에 산주 자신이 직접하겠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가 거기 가서 밥사먹고 그렇게 못하니까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시키겠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산주가 할것이나, 조합에다 줄것이나 결의를 하게 되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보조금만 가지고는 산 전체를 못할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1ha하면 자부담을 안했을때는 보조금만 가지고 전체면적을 100% 못할것 아닙니까?

나머지 면적에 대한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그것이 사실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업은 지금 보조가 80%, 90%가 되어있는데, 풀베기사업하고 천연림보육사업만 지금 40%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조율이 확대가 되어가지고 80%, 20%가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전의를 해가지고 영세 산주들이 풀베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확대가 되었는데, 간혹 산림조합에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산을 호명리에 몇정을 가지고 있는데, 산주가 서울에 있는데 내가 가보니까, 영터리로 했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지금 실행하고 있는 사항은 60% 보조금으로 100% 공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단은 사실 기능공이고 일반 산주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의 도급으로 주었기 때문에 죽자,

살자하고 아침 5시부터 저녁때까지 하지요. 그래서 방법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흡한 점이 좀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임협에 위탁시에 산주가 자부담을 같이 부담했을때에 돈을 산주에게 주잖아요. 보조비를 말입니다. 그럴때 무슨 수수료를 공제한다고 하는데 그 수수료 명분이 무엇 입니까?

임협에서 그렇다고 하던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주민여론이 그래요.

○ 山林課長 孫榮澤 : 저희들은 사업비를 임협에다가 주며는 산주는 직접 수령을 하고요. 위탁된것은 수수료고 뭐고 공제하는것은 없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없어요?

○ 山林課長 孫榮澤 : 예, 왜냐면 간혹 산주들도 돈이 있는 분들은 자부담을 내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다가 내는데 사실상 많치는 않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당신네들 자부담이 얼마인데, 좀 내시오. 그러는데 안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 金斗經 委員 : 산림과 하고 임협하고 삼각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여론화도 있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임목을 수송하기 위해가지고 벌채를 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그 위에 도로를 복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보아도 몇군데 있습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그것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벌채를 하고 나무를 베어서 문제로를 개설하고서 복구를 안하면 산이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복구비도 받고 또 문제로를 복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다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 山林課長 孫榮澤 : 그것이 혹시 복구가 조금 미흡한지는 몰라도 복구비라던가 이런 사후관리는 철저히 되어 있습

니다.

복구를 하는데 다가서 일일이 지도감독을 못해가지고 허술하게 복구가 되고 대충 나무만 심어놓고 풀씨만 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만큼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현재 산림훼손으로 산지에 피해가 많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과 저하고 이장님들하고 현지답사를 하더라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알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과장님이 다 되었다고 인정 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조립하고 하예작업, 도로복구는 엉터리가 많습니다.

이점 시정하셔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알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자료가 오기전까지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촌마을 개발이라고 있지요?

○ 山林課長 孫榮澤 : 네.

○ 李慶鎭 委員 : 선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산촌마을을 작년에 춘천 사북면 지압리에서 했지요?

○ 山林課長 孫榮澤 : 네. 전국에서 2개소 뿐입니다.

○ 李慶鎭 委員 : 2개뿐인데 아니 시군 별 독립가 현황을 보더라도 평창군이 모범 독립가가 하나, 우수독립가가 12개로 해서 29개 독립가가 있어요.

그런데 춘천시에는 독립가가 3개밖에 없는데 독립가가 많은 지역의 평창군 같은 곳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어떻게 춘천같은 곳에서 사업이 추진됩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의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배경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하십시오.

○ 山林課長 孫榮澤 : 산촌마을이라면 5개년 계획으로 120억이 투자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작년에 도하고 전국

에서 추천된 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런데 추천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받을수 있겠끔 노력을 하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춘천에 독립농가가 3개소이고 평창군에는 29개인데 순위나 점수로 봤을때 당연히 1번인데 추천되지 않은 이유가,

○ 山林課長 孫榮澤 : 그런것이 아니고 마을여건이라던가 거기에 자연조건이라던가 거기에 인구,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조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작년에 강원도에서 추천된것이 지압리, 저희들 흥정리, 또하나는 양양까지 3개소가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부터 그것이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흥정리 마을도 1차에서는 누락이 되었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조사가 되어서 어느마을 보다도 여건이 좋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것이 137억 2,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30억이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독립가 쪽으로만 보면 타시군에서 따라올래야 따라 올수 없습니다 . 노력만 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요.

○ 山林課長 孫榮澤 : 독립가하고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 李慶鎭 委員 : 용자하고 보조해 주는데 그럼 누가 합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이런것을 지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자연조건과 마을여건이 맞아야만,

○ 李慶鎭 委員 : 조건이 흥정리만큼 더 좋은곳이 있습니까?

춘천시 사북면 지압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 山林課長 孫榮澤 : 제가 평창군 산림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압리 얘기를 하면 좀 우습습니다만, 거기에는 3,000ha를 가지고 수렵장도 내년부터 개설이 되고 거기 휴양림이라던가 또 박물관이라던가 이런 여러가지 산림분야의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것이 1,370억일겁니다.

산촌마을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복합적으로 중앙에서 여건판단을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 李慶鎭 委員 : 지금 흥정리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 山林課長 孫榮澤 : 후보지로 올라가 있는것은 틀림 없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것좀 잘 하십시오. 대단한 사업인데, 30억씩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조금전에 자료요구 한것은 도착이 되었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 幹事 金斗經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時17分 監査中止)

(16시40분 감사계속)

○ 幹事 金斗經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委員 : 자료 12번째 입니다 오대개발 허가관련 사본일체 (3차연기서류)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중간복구 명령서, 공문, 도에서 시행한 사본조차도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에 제목은 있는데 어떻게 공문은 없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에는 '95년 2월 13일자 허가한 토석채취허가 사본 일건서류하고 '96년 11월 12일자 산림복구를 위해서 오대개발에서 저희군에 문서를 제출한것 하고 복사를 해가지고 복구비 예치한것 하고 첨부가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니까 그것은 오대개발에서 산림과에다 제출한것이 아닙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네.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오대개발이 산림과에 제출하기 전에 평창군수 명의로

이렇게 이렇게 중간복구를 하라던가, 이렇게 이렇게 적제장이 잘못되었다던가 하는 중간복구명령서를 내보냈을것 아닙니까? 안보내고 이렇게 자진해서 오대개발에서 서류를 보냈습니까 군에다가?

○ 山林課長 孫榮澤 :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4회때에 10월 25일날 현장에 가서 중간복구 여부를 확정을 짓지 못해서 저희들이 문서로서 오대개발에다 보내지 못했습니다. 보내지 못하고 자진해서 복구설계서를 해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공문으로 시행한 사실이 없다,

○ 山林課長 孫榮澤 : 네. 없고 얘기를 했더니 12월중에 측량이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12월중에는 복구설계서하고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그러한 내용이 11월 12일자 오대개발에서 받은 문서입니다.

거기보면 문서내용에 측량과 설계, 그리고 비용계산 등 총체적인 중간복구 설계

를 하여 '96년 12월중 귀청 산림과에 중간복구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중간복구 명령서를 시정명령을 내리던 중간복구 명령을 내리던 공문시행을 해서 내려졌어야 하는데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없습니다. 그것은 미처 저희들이 어느부분, 어떻게 중간복구를 내려야 하나 그러면, 우의원님도 현장에서 보셨지만, 지금 원석이 아닌, 석분이 쌓여있는곳을 중간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치우고 중간복구를 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상 중간복구 명령을 못내렸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이해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의 질의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예.

○ 禹康鎬 委員 : 불법야적장 처리문제 현재 석분, 그다음 쇄석, 적치된 장소가 산림훼손 허가구역내로서 불법으로 야적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10월 25일 현지확인시 사업장내 야적물은 다른장소 이송과 적절한 복구대책에 대하여, 이렇게 되었는데 다른장소로 옮기게 되면 10t 차로 3,000대 분으로 경비, 1억 1,000만원이 소요되고 옮길 장소, 기타등등 예를들어서 야적물 이송은 불가한 실정이다, 이것은 무슨에깁니까? 그러면 법을 위반해도 이만한 비용이 많이들고 많은 물량이동, 이런것이 있어서 산림과에서 눈감고 지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아니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알고있는것은 지금 석분이 야적되어 있는 그 장소는 허가구역 내입니다.

허가구역 내에다가 석분 30,000누배 정도가 적치가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 禹康鎬 委員 : 석분이 있는자리, 쇄

석이 있는 자리가 중간복구를 해야되는 지점이 아닙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그렇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중간복구를 안하고 있으면 당연히 치워야지요.

허가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방치해서 쌓아 놓을수 있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신것이 당위성이 없잖아요?

○ 山林課長 孫榮澤 : 그것이 약 30,000 루배가 되는 그러한 많은 량을 옮길려니까 그것이 약 3,000대분이 소요되고 경비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 禹康鎬 委員 : 30,000루배가 아니고 3천만 루배라도 잘못했으면 옮겨야 합니다.

300루배라면 옮기라고 할겁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중간복구를 한다 해서 옮겨서 중간복구를 하라 하면 조금 행정상에 무리가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무리가 아니라 산림과장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89년에 최초허가를 내줬는데

3차 연장까지 왔습니다. '91년, '93년 '95년, 중간복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한번도 없으면 직무유기지요. 어떻게 한번도 중간복구를 안하고 계속 연장허가를 내줍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아니요. 우의원님도 그 현장을 보셨지만 그것을 치우고서 과연 중간복구를 하는것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추진하는것이 정당하냐, 그렇지 않으면 오대개발이 자금도 넉넉치 못하고 개발 그러한 여기다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복구할 능력도 없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능력없는 회사를 이렇게 최초부터 3차연장까지 들어갈수 있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저는 당초에 석분있는곳에다 옹벽을 치도록 이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옹벽치는것은 무리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위를 다시 깎아서 안정각을 유지해서 계단식으로 복구를 하고 풀식도 하고 나무도 심고 그러한 방법으로 복구를 하겠다, 회사에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사의 의견도 따라 줘야 합니다.

모든 재정적이라던가, 그런것을 따라줘야하고 절대 제가 옹호하는것은 아닙니다.

○ 禹康鎬 委員 : 그것은 지금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발언하신 그 자체도 잘못 되었어요.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허가조건 및 산림보호상 지도등 명령에 수허가자는 채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태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4조에 있고 5조, 수허가자는 적지복구를 완료할때까지 허가구역과 그부분 임야에 대하여 산림의 훼손, 기타 임야의 피해사실을 발견하였을때는 즉시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관할 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된것이 뭐가 있습니까?

석분이나 쇠석을 안치우고 복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앞에있는 산을 먼저 간다면,

○ 山林課長 孫榮澤 : 까는것이 아니지요. 안정각을 유지하려고 하지요.

○ 禹康鎬 委員 : 안정각 유지하는데 안까고 할 수 있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조금 급경사를 완경사로 낮추는 작업입니다.

○ 禹康鎬 委員 : 현지에 가 보셨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네.

○ 禹康鎬 委員 : 제가 4번 가보았습니다. 과장님 그날 처음 가보셨잖아요?

○ 山林課長 孫榮澤 : 네.

○ 禹康鎬 委員 : 직접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세요. 떠 갈수 있으면 더 완급하게 만들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적어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현지확인을 통해서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했으면 과장께서는 성의 있게 현지확인 은 반드시 한번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하셨잖아요?

○ 山林課長 孫榮澤 : 현지확인 은 그때

했지요.

○ 禹康鎬 委員 : 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못가봤잖아요?

○ 山林課長 孫榮澤 : 저는 직접 산에 올라가 보지 않았습시다.

○ 禹康鎬 委員 : 의원이 거기에 올라가서 확인을 세번씩 하고 내려왔는데 과장님이 한번도 안하고 답변한단 말입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아니 내용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 禹康鎬 委員 : 무슨 내용을 알아요?

○ 山林課長 孫榮澤 : 사실 그 많은양의 석분을 다 옮기고 거기다가 적절한 공법에 의해서 복구를 하라 그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 禹康鎬 委員 : 회사 개인에 대한 특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최초부터 3차연기까지 중간복구를 한번도 안했어요. 중간복구 예치비를 3억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3억은 증권이고 실지 예치비 금액을 낸 것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 아닙니까

1,000만원 가지고 복구할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 山林課長 孫榮澤 : 중간복구는 원인이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회사가 부실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그래서 옹벽을 치라니까 옹벽을 칠려면 그것이 100m내지 150m 쳐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법이 여러가지 공법이 있으니 다른 공법으로 복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날 저희들이 문서를 받아가지고 그 문서에 의해서 측량과 설계가 나오면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전적으로 회사를 믿고 사업을 계속 맡기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 자료 하나만 챙겨주세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나올것인데 오대개발 토석채취 허가신청 할때 대기환경보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필히 해야지만 이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 사업필한 공문 시행한 서류 사본일체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복구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 山林課長 孫榮澤 :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석분 3만루배를 다른장소로 다 이송을 해가지고 운반을 해가지고 치운다음에 그 공법이 특별한 공법이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용벽을 칠려면 그 안으로 치우고서도 할수있는 문제인데 그러한 공법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가지고 복구를 할것이나 그런 문제는 일단 회사에서 12월중에 측량을 해가지고 설계서를 제출한다니까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적절한 공법으로서 군수가 승인을 할것이나, 안할것이나, 결정한 다음에 의원님한테 다시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최초 허가는 중간복구 명령서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럼 1차연기, 2차연기, 3차연기때 중간

복구명령을 한번도 내리지 않은 사유, 그다음 중간복구명령을 하지 않았는데도 개인한테 특혜를 준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보세요.

당연히 중간복구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구명령서 공문도 하나 내보내지 않았어요.

○ 山林課長 孫榮澤 : 중간복구는 그 사업이 계속되면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가 계속 원석이라던가 석분을 쇄석을 야적을 시키는데 과거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장소에 복구 할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중간복구를 안한걸로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대조적인 예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현지확인 갔다 왔던 간평연립, 대우사원주택, 이부분에 지금 피의자가 간평연립 소유주 정산도씨 입건 수사중에 있지 않습니까?

산림훼손을 얼마큼 했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393㎡입니다.

○ 禹康鎬 委員 : 393㎡이면 몇평정도 됩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약 100평정도,

○ 禹康鎬 委員 : 100평 산림훼손 한 사람은 지금 입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산림훼손을 하고 이것은 개인이고 회사고 그런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중간복구 하나도 안했는데, 중간복구 하나도 안했으면 산림훼손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사람은 회사 입장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산림과에서 그냥 두는 겁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신 부분이 계시는데 393㎡는 완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이 사람도 그 이전에는 393㎡ 불법산림훼손 하기 전에는 어느정도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393㎡를 허가받지 않고 산림훼손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산림훼손한 부분을 산림과에서 어느 공무원이 적발한 부분이 아니고 현지확인을 통해서 제 요구에 의해서 밝혀

진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조금 잘못알고 계시는것이 당초의 허가는 1,054㎡를 농촌주택으로 그때 간평리 이장이 88년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것은 제가 잠깐 예를들어 말씀드린 부분이고 오대개발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그래서 그 문제를 정산도씨가 매입을 해가지고 먼저 복구한것을 다 치워버리고 그 면적을 포함한 잔여 불법으로 한면적이 393㎡가 되고요 이 오대개발은 훼손구역내 입니다.

훼손구역내기 때문에 불법으로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형사처벌을 하고 입건을 해야지요.

○ 禹康鎬 委員 : 제가 이해를 못하는것이 아니고 지금 산림과장께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3차 연기가 될때까지 중간복구를 한번도 안시킨것이 직무유기란 애깁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그것은 행정상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는 하겠지만, 구역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건을 할수가 없습니다. 입건대상이 아닙니다. 간평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고,

○ 禹康鎬 委員 : 입건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의 공평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안그렇습니까?

개인은 당하고 회사는 특혜를 받고 개인은 당해서 그냥있고 회사는 특혜를 줄수 있는 과장께서도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 山林課長 孫榮澤 :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측량이 되고 복구설계가 되면 12월 초순경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면 승인을 할것이나, 아니면 다른 공법으로 조정할것이나, 그러한 사항을 결정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많은 돈이 들어서 못한다고 지금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량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 山林課長 孫榮澤 : 하여튼간에 12월 중에 설계측량이 되어서 설계가 되어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되니까 그때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委員 : 이해로 끝나는 부분입니까?

보세요. 오대개발에서 군청에다 제출한 '96년 11월 12일자 공문입니다.

회사는 중간복구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단지 작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의 극대화 와 물류비용의 절감등 여러가지 여건상 중간복구가 늦어졌으나, 이랬어요.

무슨얘깁니까? 그냥 방치해 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사가 이렇게 인정하고 있으면 지도감독을 전혀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중간복구가 늦어졌기 때문에 12월중에 설계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 禹康鎬 委員 : 제가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안그러면 제가 직무유기로 분명히 고발하겠습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네.

○ 禹康鎬 委員 : 어떻게 생각하세요?

○ 山林課長 孫榮澤 : 그럼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 禹康鎬 委員 : 중간복구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하지않고 연속성과 효율성 여러가지 예를들어서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문서가 지금 사전보고 된것으로 군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네.

○ 禹康鎬 委員 :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가 되도록 방치해 두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 山林課長 孫榮澤 : 방치한걸로 인정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직무유기지요?

○ 山林課長 孫榮澤 : 직무유기에 해당되면 벌을 받아야지요.

○ 禹康鎬 委員 : 해당이 안됩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그것은 제가 판단

을 못하지요.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이 되겠지요.

○ 禹康鎬 委員 : 총체적으로 비용계산등을 해가지고 산림과하고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그다음 현재 중간복구 예정지에 있는 제품, 자기네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없다, 필요하다면 복구자재로 쓸수 있는것은 감수하겠으나 다른것 예를들어 야적은 사업상, 그리고 국가경제의 손익상 물류비용 타장소의 입지전용 실행이 어렵다는점을 감안하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테니까 너희 군에서는 눈감고 가만히 있어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네. 맞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맞다는 답변은 산림과장께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부분을 인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 山林課長 孫榮澤 : 네.

○ 禹康鎬 委員 : 그다음 부분적으로

작업중이였었는데 중간복구는 관계기관 하고 관계자들과 충분히 숙의하여 성실히 시행할것을 약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약속 한것은 없고요, 그 회사의 입장이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회사가 그렇게 시행을 안하면 어떻게 제지하실 겁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하도록 종용을 해야지 법적으로 어떤 부대조건을 위반했을때에는 부대조건 이행을 안한다는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행정제재를 할수 있지만 다른 법적제한은 없는걸로 이렇게

○ 禹康鎬 委員 : 제대로 한다는것이 일단 우리가 공소화된 공문이 군수명의로 단한번도 중간복구명령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네.

○ 禹康鎬 委員 : 그랬으면 그사람들도 분명히 할말이 있지 않을까요?

문서화 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 전했거나 그랬을때는, 문서화된 공

문이 없을때 그사람들이 빠져나갈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면 지금 설계하고 측량을 하고있는 중이니까,

○ 禹康鎬 委員 : 회사에서 이 답변서를 왜서 군에다 냈느냐 말입니다.

군에서 이렇게 하라고 공문도 한장 안보냈는데 이것을 자진해서 왜 냈겠냐는 말입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자진해서 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복구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회사에 의견을 제시한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니 행정업무를 말로 하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말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인자가 중간복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표시로도 받아줘서 설계가 측량이 끝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적법이면 승인을 하고 그것이 잘못되면 다시 적정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지금현재 상태 자체가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1차, 2차, 3차 연기 해주면서 중간복구 한번도 하지않은 부분,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것을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안그렇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저는 그것을 불법이라고 인정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연기를 해주면서 복구명령을 안했다, 그것이 불법으로 보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판단이 안가는데요.

○ 禹康鎬 委員 : 당연히 그 자체도 불법이지요. 직무유기라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산림훼손 허가를 내렸으면 그 산림훼손에 대한 부분은 연기할때 복구명령이 당연히 나가야지요.

○ 山林課長 孫榮澤 : 아니 연기할때도 하지못할 여건상 놓여있는데 어떻게 중간복구 명령을 내립니까?

○ 禹康鎬 委員 : 그럼 재연기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요.

○ 山林課長 孫榮澤 :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지 사업이 연속성으로 계속적으로,

○ 禹康鎬 委員 : 제가 지금 개인적인 이해를 요구하는것이 아니에요.

안그렇습니까?

서면으로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무슨 개인적인 이해를 요구하는겁니까?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다음 오대개발에서 낸 자료에도 있어요.

토사유출방지및 복구계획으로는 절개지구는 시드스프레이로 녹화할 것이며 평지구는 나무심기및 씨뿌리기 새심

기를 하여 최소한 시일안에 산림의 원래의 목적으로 환원될 수 있게끔 계획 설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계획서 받아 보셨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2월중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

다.

○ 禹康鎬 委員 :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은 반복해서 답변하시면 감사가 어쨌든 끝까지 갑니다.

사업계획서 1995년 2월달에 제출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96년도 자료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가 자료내는걸로 그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네. 그렇습니다.

○ 禹康鎬 委員 : '95년도에 회사에서 낸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그것은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우강호 위원 : 사업계획서 1995년 2월 주식회사 오대개발 대표이사 이영림이 평창군수 앞으로 보낸 현황표며 전부다 해가지고 14항에 토사유출방지 계획서에 그렇게 들어 있어요.

자진해서, 그 이전에도 한번도 안했을 뿐더러 '95년도에 공문시행 하고도 '95년 2월부터 '96년 지금 11월중인 이때까지 단 한번도 중간복구 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회사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부분인데 지금 다시 또 그러한 공문을 군청에다 보내가지고 하겠다고 하겠다는데 그 상태 그대로 믿을까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제가 적극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시드스프레이가 m²당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계장님 시드스프레이가 얼마정도 되는지 과장님께 알려주세요.

○ 山林課長 孫榮澤 : 래테리를 포함해서 약 5,500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 禹康鎬 委員 : m²당요?

○ 山林課長 孫榮澤 : 네.

○ 禹康鎬 委員 : 두트 넷트 포함해가지고 시드스프레이가 5,500원, 그것이 언제 적 계산방법입니까?

그럼 5,500원인것으로 치겠습니다.

그럼 두트 넷트 시공해가지고 그위에다

시드스프레이를 하는데 산림훼손된 중간 복구 명령내릴 부분에 금액산출이 약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옹벽 이런것은 치지 않고, 두트네트 시공해서 그위에 시드스프레이를 했을때 중간복구하는 비용, 훼손한 중간복구 명령을 내린다면 그 비용이 약 얼마나라고 생각하십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여기서 즉시 환산할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 禹康鎬 委員 :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옹벽을 못치겠다는 회사가 시드스프레이 시공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에 질의를 해볼까요?

옹벽이 찢니까? 시드스프레이나 두트네트시공법이 찢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12월달에 측량을 해가지고 설계가 들어온다니까 그때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복구설계서가 타당하면 승인을 하고 안그러면 보완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대신 반드시 하나 참고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실지적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연기를 해주면서 중간복구를 한번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차원에다가 시정명령이든 복구명령이든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하지않은 부분, 그 책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난뒤에 산림과장께서 지시던지, 평창군수가 지시던지 어느분의 지시던지 반드시 지세요.

그 진 서류를 1건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면 의회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제가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특혜가 너무 심한것 같아서

○ 山林課長 孫榮澤 : 특혜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사람 잘 알지도 못하고 제가 옹호해가지고,

○ 禹康鎬 委員 :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으로 답변하시는 것이지

개인으로 답변하시는것이 아니예요.
자연인 우강호가 질의하는것이 아닙니다
평창군의 의원 우강호가 질의하는 겁니
다. 그점 유념하세요.

그다음 간평연립 산림훼손에 대한 문제
인데 평소 산림훼손문제, 적절하게 대응
치 못한 사유는 주로 어떤것에 있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이 훼손지는 이미
복구가 완료 되어가지고 '93년도에 준공
검사를 마쳤습니다.

거기에 그당시에 잣나무 150본을 심고
준공검사를 마친후에 정삼도라는 사람이
그 농가주택을 헐고 거기에다가 연립을
건축한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연립을 건립하면서 산184번지에서 대지
220-1번지로 바뀌었습니다.

1,058㎡, 그런 과정에서 부지가 좁다 보
니까 393㎡를 그 이후에 불법으로 훼손
한것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적발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간평연립 뿐만 아니고
평창군 전체적으로 개인적이던, 회사차
원이던, 어느 단체차원이던, 적절치 못

한 이 산림훼손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총
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제가 지적하는 겁
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그래서 지난 20일
전에도 저희관내에 토사채취하고 훼손지
가 8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보고 조치할것은 조치하고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다음 상월오개리 임도
시설 사후관리, 그다음 야계사방사업의
미집행사유, 임도시설 복구 총 사업비
정산서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왜 단 한건도 붙어있지 않지요?

○ 山林課長 孫榮澤 :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한것이 아니고 강원도 산림개발연구
원에서 시행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 되어만
정산서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서가 나오면 보내주기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시다. 그때 보내주면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이 사업이 언제 이루
어 진겁니까?

시행년도가 '91년도가 아닙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당초의 시설연도는 '91년도가 맞지요.

○ 禹康鎬 委員 :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를 했던 부분은 작년이지요. 그러면 91년도 최초서류부터 '95년 서류까지는 적어도 평창군에 비치가 되어 있을겁니다.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한 부분이거든요.

○ 山林課長 孫榮澤 : 네. 맞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다음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우리 군비부담을 하지 않고 재시공할수 있는 자료제시를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군정질문때 본 위원이 분명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받았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군비부담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것도 임협에 대한 특혜지요?

○ 山林課長 孫榮澤 :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사항도 '95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95년도에 임도수해피해복구정산서 1부는 어디 갔습니까?

여기에 첨부시킨다고 되어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붙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개괄적으로 많은 부분을 요구했는데 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아서 물어보면 되고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 그렇게 감사 받으실겁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95년도 임도수해 복구사업비 정산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정산서가 금년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상월오개 임도시설의 사후관리로 야개사방사업의 미집행사유에서 하단부 있는 사업입니다.

○ 禹康鎬 委員 : '95년도에 시행한 사업도 안나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95년도에 수해가 난 사업으로서 '96년도에 수해복구가된 사업으로, 그러니까 '96년도 금년도에 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95년도에 1차 복구를 안했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그 사항도 정산서가 아직 안왔습니다.

통보를 받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96년 말인데 '95년도 사업정산서가 군에 없단 말입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사방사업하고 야개사방 이런사업은 저희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 禹康鎬 委員 : 여기 국도비가 들어가고 군비부담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 山林課長 孫榮澤 : 네. 10%입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10%에 관한 정산서라도 있어야지요.

○ 山林課長 孫榮澤 : 아니 부담만 해가지고 돈만 도에 올려보내면 시행청이 환경연구소가 되기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시행을 하고서 정산서가 내려와야 하는데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받지않은 부분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받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95년도 사업시행을 '95년도에 안받아두고 '96년말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못받았다는 얘기가 무슨에겁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95년 12월 9일날 임도준공검사원을 제출을 했는데요.

그다음 임도준공검사 의뢰를 건설과에서 12월 12일날 했습니다.

준공검사관 임명통보를 12월 19일날 해서 검사관이 토목계장 석명준, 현지확인실시를 12월 27일날 시설보완통보를 12월 29일날 순서에 입각해서 잘했는데 이 서류가 없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이 서류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아니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95년도 정산서가 없다는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이것은 '95년도에

저희들이 무이리에 신설한 사업이고 조 금전에 말씀하신것은 수해복구사업 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그 사업자체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정산을 하기때문에 그 서류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제출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재시공 여부에 대해서 이 서류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시라도 제출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 부분은 서면으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 禹康鎬 委員 : 상월오개리 임도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못가보았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답변하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아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현지확인을 한번도 가지 못한 부분인데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

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아는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들어가는 진입로에 오리나무가 몇본이나 심어져 있습니까? 새심기 간격이 어느정도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처리했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새심기가 3,100m²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지금 16,000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내일 당장 나가서 한번 세어 보시겠습니까?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현지확인을 갔다 오셨습니다.

1m, 2m 거리에 오리나무 1년생이나 2년생이 한본 있을까 말까 합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역에는,

○ 禹康鎬 委員 : 산림과 김정석씨한테 한번 내려가서 물어보십시오.

여기 의원님들 거기 현지확인 안하신분
한분도 안계세요. 사진 자료로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큼 부실공사를 했는지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소가 도 직할기관이
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없다 라는 전
이기춘 산림과장께서 변명같지 변명을
하셨습니다.

1억 지원받을려고 10억 100억씩 피해나
는 그런 지원은 받을필요도 없고 그런
연구소는 고발해도 상관 없어요.

산하기관이던 상급기관이던간에, 그것이
무슨 산림환경연구소이고 전문기관입니
까? 그렇게 부실공사를 눈에 보이도록
하는데, 동네사람들 시켜도 그런공사는
안합니다.

직접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지 않았는
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질의를 합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제가 답변할 여지
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사방 기술자 입니다.

저는 사방기술자 자격증도 없습니다만
그사람들은 그래도 자격증을 가지고서
설계도하고 시공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실하게 공사
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
에 대해서는 전임과장 하고도 여러 측면
에서 감사를 많이 받은것 같은데,

○ 禹康鎬 委員 : 그정도 중요한 사업인
데 어떻게 산림과장께서 한번도 현지확
인을 안하셨습니다?

저는 자료제출요구를 하고도 오늘아침
새벽까지 그 장소에 다녀왔습니다.

오대개발 확인 갈때도 산림과장께서 답
변 하실때 그날아침 일찌감치 나와가지
고 답변하셨다가 나중에 그 입구까지
갔다오셨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산꼭대기까지 의원이 3번 4번씩 갔다와
서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는데 답변하실
과장께서는 한번 겨우 아침일찍 나가서
그것도 입구까지만 갔다오셨다는 그런
성의없는 답변은 절대적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묻고자 하는 의원이 한번갔으면 답변하
실 과장님은 열번이상 가서야지 더 정확
하게 답변하실겁니다.

안그렇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예, 알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옛날속담 잘하시지요?

○ 山林課長 孫榮澤 : 사실 이 문제는 작년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소홀하게 다루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이미 지적이 되고 보완이 되고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도 보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어차피 보수작업이 이루어지고 보완작업이 이루어 진다면 거기에 공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의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소홀히 다루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95, '96년도 2회에 걸쳐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소홀이 다룰 사업장이 절대 아닙니다.

그밑에 많은 농경지와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불안해서 살기 어려울정도입니다.

그다음 임도시설, 주민들 수해차원에서 야계사방을 해주기로 했다가 고성산불 피해로 전면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서 주민들 동의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어제 그저께 이장님하고 주민하고 내분이 저한테 다녀갔습니다.

그분들께 배경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금년도에 2km 못한것을 내년도에 2km를 해주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하고 거리가 먼 마을안길 포장을 산림과에서 지휘부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줄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말씀 하시길래 산림분야에서 추진된 사업은 제가 도라던가, 산림청에 건의해서 물량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만, 마을안길은 옛날에 새마을과가 있을때에 하던 사업인데,

○ 禹康鎬 委員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요구 할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올해 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다른 단수조항을 붙일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함

니다. 안그렇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그래서 어제 그에게 다녀갔기때문에 아직 지휘부에다 보고를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도 하고 해가지고 마을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서, 그분들과 그런사실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한쪽은 저입니다.

제가 상월오개리 이장을 포함해서 반장들하고 그동네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고성산불로 인해서 그쪽으로 긴급하게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할수있는 우리힘, 이런 차이로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충분히 보상 해주고 내년에 2km를 해주겠다, 라고 제가 미리 다른 소요를 당하기 싫어서 양해를 구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미리 막아주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9월 3일 도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마을주민에게 단 한마디 얘기도

없었어요. 물론 본 의원에게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총대를 누가 매고 나와야 할까요?

○ 山林課長 孫榮澤 : 그것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저희 담당직원인 김정석이가 일부러 나가서 주민들하고 이장을 상면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이해가 갔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길을 꼭 확보를 해주시요.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양해를 얻어가지고 1년 차이나니까 이해를 해주시요. 기왕에 고성보다는 여기가 덜 시급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해를 받았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과장님이 거기를 가보시지 않았는데 고성보다 시급한지, 시급하지 않은지 완급을 아실수 있습니까? 직접한번 상월오개리 임도피해 난곳을 가보세요. 수십군데 현장을 한번 보시

면 어디가 먼저이고 어디가 나중인지 판단이 서실겁니다. 그런답변 하시지 마세요. 주민들한테 몰매맞아 죽습니다. 상월오개리 주민은 평창군주민은 강원도민이 아닙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여하튼 어느정도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97년도 사업에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산림과장께서 반드시 재임중에 계시고 재임중에 고성으로 넘어간 부분이니까 책임을 지시도록 하십시오.

책임 지시겠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네. 책임 지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나머지 일건서류는 서면제출 요구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네.

○ 幹事 金斗經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

십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이경진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4건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 李慶鎭 委員 :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하는것이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맨 처음 산림훼손허가 신청은 8월 24일날 접수된 건입니다. 그것은 아들 김형식 하고 안종관 하고 두사람이 같이 제출된것입니다. 그래가지고 9월 9일날 처리 시한인데 이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9월 6일날 연기원을 두번 냈습니다.

9월 5일까지 연기를 해주시요. 해가지고 연기원을 냈다가,

○ 李慶鎭 委員 : 아니 산림과장님, 산림훼손 신고서를 제출해서 신고를 하는데 몸이 아파서 취하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아니 몸이 아픈것이 아니고 연기원을 두번을 냈어요.

연기원을 9월 5일까지 연기를 해달라고 연기원을 냈습니다.

연기원을 내가지고 그 이후에 처리기간이 되니까 본인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취하를 하겠다,

○ 李慶鎭 委員 : 아니 처리기한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군수사정이지 본인이 처리기간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취하합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아니 본인이 9월 5일까지 연기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다가 9월 6일날 취하원을 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아니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이유없이 자기 집안 사정때문에 허가를 보류하고 취하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됩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처음의 사유는 문제를 신고하고서 비로 인해가지고 기간내에 경계표시를 하지 못하고 해서 9월 5일날까지 연기를 하겠다고 연기원을 제출하고 그 이후에 9월 6일날 문제로 신고민원 처리기간이 도래되었으므로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현지확인을 할 수 없어 경계표시를 못했기 때문에 취하를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서 취하가 된 것입니다.

○ 李慶鎭 委員 : 보완시키면 안됩니까? 보완을 시키면 되지 취하를 했다가 새로 제출을 했다가,

○ 山林課長 孫榮澤 : 본인이 그렇게 원을 해가지고 취하를 내니까 그 이후에 9월 12일날 재신청이 들어와서 그 경계 표시라던가 이런것을 완비 해놓고서 나가서 9월 19일날 처리 해 드린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24일날 접수해가지고,

○ 李慶鎭 委員 : 아니 제 얘기는 전부다 취하된 서류이고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취하함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루가 급한데 여기를 보면 각 과별로 다름니다만, 13일, 보름, 20일, 10일, 취하를 시키지 말고 보완을 시키면 한 2-3일만 더 하면 되는데,

○ 山林課長 孫榮澤 : 문제로는 나무를 실어내기 위해서 길을 닦는 것인데

비가오면 사실상 지장이 많거든요.

○ 李慶鎭 委員 : 그런데 이 서류는 3일 지연되었는데 3일동안에 취하했다가 다시 접수시키면 3일이면 하루 이를 보완시켜서 처리하면 되는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처리일자보다 3일후에 처리했는데 보완시키면 되는것이지 무슨 취하를 했다가 두번씩 세번씩 오게 합니까?

취하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현장의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 李慶鎭 委員 : 좋습니다. 다음건을 설명해 주십시오.

○ 山林課長 孫榮澤 : 현장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건은 신영철씨 건입니다.

○ 李慶鎭 委員 : 김형식 건은 없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그것이 한건입니다. 김형식씨와 안중관씨것이 한건입니다.

위의 8월 24일자로 날짜가 똑같습니다.

두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신영철씨건은

1월 12일날 접수가 되어가지고 처리기한은 1월 25일까지 입니다. 그래가지고 1월 15일날 불허가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중에 있는 곳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 후 허가함이 타당하다는 협조부서와 협조가 되어서 불허가 통지를 일단은 해가지고 일건서류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월 13일날 문서가 다시 들어와서 관계자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건설과의 협조를 받았는데 지방행정주사 남상기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동시행령 14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사항은 없으나 인허가를 득해야 할것이므로 협조되니 와서 10월 23일날 허가를 하게 된것입니다.

○ 李慶鎭 委員 : 아니 수립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끝난겁니까?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끝났으므로 해서 허가를 처리하신 겁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그 사항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하여튼 심의조서 심의사항에 가하다고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사유를 달아서 반려를 시켰는데 그 사유의 원인이 해결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 山林課長 孫榮澤 : 그 사항은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심의사항의 검토조서에 가하다, 그러니까 1월달에는 안되어도 10월달에,

○ 李慶鎭 委員 : 그렇다면 과에 서류를 반려하실때 건설과의 의견이 불합법하다고 해서 반려를 하셔야지, 건설과의 국토이용계획변경사항, 취락지구개발지구계획수립 하고 반려한다 해놓고 사유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시 허가를 합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제가 문서로 봤을 때는 그것은 1월 12일날 행위이고 그 이후에 10월 15일날 협의할때는 벌써 9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토이용계획변경및 취락지구개발에 대

한수립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가한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것 같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러면 그 지역에 취락지구개발수립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내용을 지금,

○ 山林課長 孫榮澤 : 그것은 분명히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 李慶鎭 委員 : 그럼 그것을 확인 안해 보시고 그냥 그런것 같다고 해서 하셨나요? 이것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해결이 되었느냐 안되었는지 확인을 안해보시고 그냥 처리합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저희들 의견은 그런것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나왔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지요. 이 문서로 봤을때에, 지금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 서류를 첨부해 놓고 처리하는것이 원안이 아닙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이상만씨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분은 당초 7월 30일날 접수가 되어가지고 8월 9일까지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19일날 1차 보완통보를 8월 2일날 받았으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취하원을 제출하오니 일건서류를 반려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의 취하서가 8월 19일날 접수가 되어가지고 그 서류를 당일 일건서류를 이상만씨한테 송부 한것입니다.

그이후에 9월 23일날 다시 보완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9월 23일날 제출이 되어가지고 10월 1일 허가가 된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李慶鎮 委員 : 사업변경된 과정이 보완으로서 해야할 변경이라고 보는데 굳이 취하를 했는데 취하한것이 합당하게 취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본인이 당초에 일 반주택 및 여관신축을 면적이라던가 그 평수 규모라던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제출해 놓고 생각해보니까 그것을 증감을 시켜서 변경을 시켜야 되겠다,

○ 李慶鎮 委員 : 증감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그것은 잘모르지요. 그러한 내용에서 사업계획변경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취하원을 제출해 가지고 반려를 받아가지 않았는가

○ 李慶鎮 委員 : 그렇게 당초계획하고 나중계획의 차이점을 알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합당한 취하인지 아니면 강요에 의한 취하인지가 판단이 되는데 취하라는것이 전부다 강요하는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초계획과 나중계획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山林課長 孫榮澤 : 여기서는 지금 문서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의 사업 계획서는 본인한테 가있고요. 그 이후에 변경되어서 제출된,

○ 李慶鎮 委員 : 취하하면 서류를 보관해놓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아닙니다. 본인한테 주지요.

○ 李慶鎮 委員 : 복사해 놓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孫榮澤 : 예, 본인한테 다 주고요.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 변경된 것 첨부한 서류는 저희들한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것은 본인한테 가 있고요 나중것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할려면 본인한테 보관하고 있는지 양해를 구해서 얻어서 어떻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그런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려서류는 본인한테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반려가 아니라 취하잖아요?

○ 山林課長 孫榮澤 : 취하를 하니까 일 건서류를 다 돌려줘야지요. 거기서 쓸 것은 다 빼내쓰고요. 필요없는것은 내 버리고 또 사업계획서 변경같은것은,

○ 李慶鎭 委員 : 취하한 사유가 합당한지 아닌지는 본인한테 가지고 오지 않고서는 확인하지 못하는데,

○ 山林課長 孫榮澤 : 취하 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들끼리 어떤 사정에

취하를 내는것인지,

○ 李慶鎭 委員 : 서류가 전부다 취하입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요구하신 이 내용이 4건인데,

○ 李慶鎭 委員 : 취하한 내용도 물론 봐도 그렇지만 처리 하루전날 전부다 취하 했어요.

○ 山林課長 孫榮澤 : 4건이 이런사항으로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幹事 金斗經 : 과장께서 즉시 답변못하실 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孫榮澤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박상만씨건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월 1일날 접수가 되어서 5월 11일날 했는데 이것은 막연하게 그냥 박상만씨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건을 취하 하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런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애매합니다.

○ 李慶鎭 委員 : 부군수님! 이런사항

을 저희들이 판단해보기 위해서 전부다 대체적으로 민원서류가 처리되기 하루전 날 전부 취하되는데 당초계획하고 재접 수 되어서 처리된 내용들을 감사자료로 받은건데 당초의 내용하고 나중내용을 비교 해볼수 있어야지만 합당하게 취하가 되었는지 취하를 권유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서류가 원래 없습니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副郡守 朴容康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李慶鎭 委員 : 순수하게 본인들의 사정 때문에 취하를 했는지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 취하가 되었는지 확인할 기회는 없네요?

○ 副郡守 朴容康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山林課長 孫榮澤 : 이상으로 이경진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민원서류처리관련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幹事 金斗經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時55分 監査中止)

(18時10分 監査繼續)

○ 委員長 禹康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建設課 所管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을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는 평창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을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安元守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건설과장 안 원 수

(건설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禹康鎬 : 감사대상 사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무보고는 끝에실음)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돈문 위원 : 유돈문 위원입니다. 관내 송어장 우수인용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 감사자료를 보면 우수전용허가 현장내역, 이레가지고 해

주신것이 22명인데 맞습니까?

○ 建設課長 安元守 : 네.

○ 劉燾文 委員 : 그러면 어제 환경단속을 하는 환경보호과에는 송어장 수가 20개, 또 축산과의 자료는 29개, 건설과 자료 우수인용 허가 내준것은 22개, 이렇게 각각 과별로 다른데 한 책임 기관 단체장 밑에서 통계가 이렇게 각각 다른지 어이가 없습니다.

어느쪽을 믿어야 할지 한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송어장 숫자가 맞지도 않은데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다고 믿을수 있습니까?

관내우수인용 허가 년수가 몇년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 우수허가, 우수용량,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0.6, 0.1, 0.3, 0.72, 0.22, 이 물량을 말씀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물량이 0.6, 0.3은 얼마만인지 이 물량을 가지고 송어장 평수를 시설할 수 있는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수인용허가가 미탄에 15개 입니다

한개울에서 무려 7개소가 있습니다.

유수전용허가 거리가 제한이 없이 막 내 줄수 있는지, 지금 그러니까 환경오염되어서 주민이 살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수허가를 제안없이 내주는 이 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수허가를 내주면 몇년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建設課長 安元守 : 기간은 5년입니다

○ 劉燉文 委員 : 5년인데 다시 받을때에는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면 그 여론을 들어서 인근 정선, 삼척같은 곳은 유수전용허가를 안해 주었습니다.

평창군은 자료를 보면 95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 다 내주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도 않고 그냥 내수면하는 사람들이 유수전용허가가 들어왔다고 해서 막 내주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집행부에서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지 이렇게 할수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建設課長 安元守 : 저희들 건설과에

서는 유수인용허가는 용량을 보고 해주는데 용량이 타 농경지나 그다음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나 우리 급수시설에 지장이 없으면 용량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 劉燉文 委員 : 그러면 0.6은 용량이 얼마이고 0.3은 얼마이고, 0.722은 얼마인지 이 세가지만 물량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 建設課長 安元守 : 0.6이라 하면 초당 0.6m'이라는 애깁니다.

○ 劉燉文 委員 : 0.3은요?

○ 建設課長 安元守 : 0.3도 초당 0.3m'을 쓴다는 애깁니다.

○ 劉燉文 委員 : 그렇다면 0.6, 0.3, 여기 0.6은 미탄면 창리 원복수산,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원복수산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또 0.3 기화리 호림수산, 춘천의 한익수씨가 하는겁니다.

거리도 안가보셨지요?

0.722은 청옥수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수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建設課長 安元守 : 제가 송어장에 안
가봤기 때문에,

○ 劉燉文 委員 : 아니 물을 초당 뽑아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
어장 크기가 여기에 달려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 建設課長 安元守 : 크기에 달려 있습
니다.

○ 유돈문 위원 : 물을 제일 많이 쓴다
는 지역 송어장이 더 늘릴수도 없고 농
지전용 허가를 농정과에서 했겠지만 제
일 적은곳에서 물을 제일 많이 쓰는것으
로 되어 있는데 우수전용허가 군에서 돈
을 받습니까? 받는것은 없습니까?

○ 建設課長 安元守 : 받는것이 있습니
다.

○ 劉燉文 委員 : 얼마씩 받습니까?
자료에 없습니까?

○ 建設課長 安元守 : 죄송합니다.
우수 사용액 산정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 劉燉文 委員 : 지금 이 송어장이 생

긴것이 어제 그저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몇년이 지났는데 근 10여년 가
까이 되어 가는데 군에서 지금까지 한푼
도, 돈은 재무과에서 받으니까 건설과에
서는 돈받는데 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관
심이 없어서 모른다면요.

○ 建設課長 安元守 : 알고 있는데,

○ 劉燉文 委員 : 아니 그럼 돈을 몇년
을 받았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됩니
까? 그것은 얼마씩 송어장 우수전용허
가해준 22개가 있습니다.

이 22개에 대해서 하나같이 싹 자료를
주세요. 한가지 더 물어봐야 하는데
시간이 워낙 많이 걸렸기 때문에,
송어장 22개소 내준것이 다 돈을 받지요

○ 建設課長 安元守 : 네. 다 받습니다

○ 劉燉文 委員 : 그것을 자료로 받는것
으로 하고 송어장 환경보호과 20개, 축
산과 29개, 건설과 22개, 이렇다면 축산
과에서 우수전용 허가를 안받고 부정으
로 내준 송어장이 생겼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된겁니까?

그러면 우수전용허가가 없어도 송어장

허가가 난다는 겁니까?

○ 建設課長 安元守 :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수점용허가라는것은 물 흘러가는것을 뽑아서 올리는것이 유수점용허가라 하고 지하수를 뽑아서 양어장을 하는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실태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들어 지하수를 할때에는 유수점용허가를 안받습니다.

복류수면상에 물을 흘러가는것을 끌어서 쓸때면 유수점용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고 지하수를 쓸때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 劉燾文 委員 : 제일 많은것이 미탄면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송어장 숫자는 평창군에 22개라는 이 숫자가 건설과 자료로 맞는데 지하수를 파가지고 하는곳은 하나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어장 숫자 쉬운것도 안맞으니 평창군 행정이 바로 가겠습니까?
됐습니다.

미탄면 취락구조지정에 대해서 간단히

물겠습니다.

본위원이 40회 회기때 군정질문을 해서 언제 지정을 하겠느냐 물었습니다.

답변을 9월이나 10월 말이면 완료되니까 지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다 지나가도 아직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이 강원도포수가 되었어요. 어떻게 된겁니까?

미탄면 취락구조를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의지가 있습니까?

○ 建設課長 安元守 :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탄면하고 방림면하고,

○ 劉燾文 委員 : 어떻게 설계가 1년씩 갑니까? 취락구조지정 설계를 1년씩 해가지고 못해서 지금 지정을 안하면 지역주민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도로를 성형을 해야지, 집도 짓고 인구가 광산이 있을 때에는 많았는데 광산이 합리화되고 인구 감소로 도읍정비는 못하고 취락지구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서

군에서 그것을 얼른 해줘야지 면에서 면민들이 집도 단장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제가 분명히 군정질문에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12월 한달이면 금년이 다가는데 군에서 계획이 없는 이런일이 어떻게 되는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안원수 : 이것은 개발촉진지역은 도에서 전체 강원도의 5%정도의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도별로 2-3개 시군씩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저희군도 지금현재 창리 지구에 대해서는 도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이 되는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 劉燾文 委員 : 지정을 받아서 '95년도에 홍기표 건설과장께서 미탄에 와서 면민을 모아놓고 공청회까지 한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어제그저께 오셨으니까 그런말씀을 하시는데 군청 행정이 과장이 바뀐다고 해도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만 바뀌면 엉뚱한 소리고,

○ 建設課長 安元守 :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劉燾文 委員 : 좀 챙겨서 아직 한달 남았지만 빨리 설계가 되겠끔해서 미탄면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 입니다. 몇일전 언론편도에 보니까 우수인용허가를 삼척시 같은곳에서 불허처분 해줘서 행정소송까지 가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송어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 소득에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환경만 오염시키는 이러한 송어장에 대해서 앞으로 우수인용허가를 불허처분할 용의는 있으신지?

○ 建設課長 安元守 : 환경오염관계를 접했을때는 우수인용 허가를 불허한다, 이것은 완전 민원사항입니다.

그런데 우수인용 허가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허해준다는것은 연구할 문제입니다. 삼척시 같은곳이 하긴 했는데 저희들은 새로운것을 허가해준다는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볼 문제지만 지정되어와서 계속 하고 있는것을 갑자기 우수인용 허가를 취소한다면 그사람들이 지하수를 파서 할수도 있어요. 꼭 그 물만 쓰는것이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 李洙現 委員 :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쭙어 본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것이 필요한 부분인데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부분을 심도 있게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세요.

○ 建設課長 安元守 : 네.

○ 李洙現 委員 : 이상입니다.

○ 金斗經 委員 : 김두경 위원 입니다. 편도시내 취락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봉평, 무이, 면온지구 취락지구가 작년 도에 '95년도 5월달에 지정을 해놓고 주민설명회까지 해놓고 현재까지 결정고시도 없이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주민이 납득할수 있는 세부

적인 계획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安元守 : 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 禹康鎬 委員 : 28쪽에 보면 96년도 사업중 10월말까지 미집행된 사업현황에서 다른 사업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들인데 마평2리 세월교가설, 96년 3월 6일 진부면에 재배부 하였는데 총사업비 1억 3,000만원 소요되어 사업비 부족으로 발주 지연, 이런 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실지 하천 이런 관리는 면에서 관리하는것이 아니고 군에서 관리하는것이 아닙니까?

○ 建設課長 安元守 : 군에서 합니다.

○ 禹康鎬 委員 : 면에다 왜 사업을 재배부 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 하천방재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월교가 과연 하천방재계 업무소관에 적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安元守 : 세월교가 이것은

완전 교량이 아니고 하천의 구조물입니다. 제방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이것은 물이 흘러갈때는, 물이 많으면 그냥 넘어가고 평상시에는 다리로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봤을때에는 하천에 속하는 겁니다. 또 도로개념으로 봤을때는 도로로 보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하천 공작물로 봐서 방재계에서 시행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다른 세월교는 하천방재계에서 담당을 안하잖아요?

○ 建設課長 安元守 : 그전에 새마을과가 있을 때에는 새마을과에서 많이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하천방재계에서 소관하는 업무하고 사실 거리가 먼것 같은데 유독 마평 세월교만 하천방재계에다 맡긴 특별한 사유가 상당히 무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建設課長 安元守 :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우리과에서 교량도 하천방재계에서 할 수도 있고 제방을 토목계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겁니다.

우리 업무규정으로 봐서 적절히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꼭 하천방재계니까,

○ 禹康鎬 委員 : 과내에는 계업무 분장이 확실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장할수 있는 업무가 있을테고 분장하지 않아야 할 업무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평2리 세월교는 개인에 대한 특혜성 다리입니다.

절대로 놓아줘서는 안된다고 다시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들 현지 확인때 일부러 전 의원들이 세월교 위치를 확인 했습니다. 놓아줘서는 안될 다리이므로 내년도 예산에도 추가입찰 운운하는 그런 발상은 아예 건설과에서 꺼내지도 않기를 바라면서 사고이월, 예산반납 그냥 받으세요. 반납 받아서 그 동네 사람들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써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建設課長 安元守 : 네. 알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다음 오대천 고수부지 용역 현황 및 작업 진척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내주셨는데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가장 큰 숙원사업인데 조속하게 사업시행이 되도록 다시한번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97년도에 제대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 建設課長 安元守 : 네.

○ 禹康鎬 委員 : 다음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징수 현황인데 미징수액이 1,447만 9천원인데 미징수액 사유는 어떠한 사유입니까?

○ 建設課長 安元守 : 하천 및 공유수면 징수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1년단위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내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이 연도별로 기간이 만일 5월달에 허가를 받았으면 다음해 5월말까지 내게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는 미징수가 많은것 같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기간 미도래의 부분이

다.

○ 建設課長 安元守 : 네.

○ 禹康鎬 委員 : 알겠습니다.

다음 34쪽에 보면 도로점용 음면별 현황 사용료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미징수액 부분도 그러한 사유입니까?

○ 建設課長 安元守 : 그렇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고지가 나가서,

○ 禹康鎬 委員 : 도로점용 허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조금 상이할것 같습니다.

일시점용도 있고 그럴텐데, 기간 미도래로 이만한 징수액이 미징수 되었다 라고는 보기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安元守 : 음면에서 부과징수 하기 때문에 집계라던가 부과징수에서 조금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 우강호 위원 : 그럼 20만 8,850원입니까?

○ 건설과장 안원수 : 네.

○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禹康鎬 :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
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
시에 이곳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 11월 28일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時37分 監査終了)

○ 出席委員

委員長 禹康鎬

幹事 金斗經

委員 李慶鎭

委員 劉燉文

委員 李相薰

委員 李洙現

委員 金鍾永

○ 委員아닌 議員

議長 金樂雲

○ 出席公務員

副郡守 朴容康

商工課長 金昌吉

畜産課長 鄭義秀

山林課長 孫榮澤

建設課長 安元守

○ 議會事務課

專門委員 辛教善

議事係長 全完鐸

地方行政書記 鄭成文

【 議 席 】

○ 議席表 (4 面に 실음)

질의 · 서면 답변서

질 문	이상훈 위원	답 변	평창군수(상공과장)
회 의	제46회 평창군의회 (정기회)행정사무감사 4차특위('96. 11. 28)		
<p>[질문요지]</p> <p>○ 방림면 운교광산개발 관련하여 광산개발 허가일은 ?</p>			

[답 변]

이상훈 위원께서 질문하신 방림면 운교리의 (주)국제광업 광산개발 허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 체 명	대표자성명	공장소재지	공장의 업종	건축면적(m ²)	허가일자
(주)국제광업	이 춘 길	방림면 운교리 22	비금속광물(규석)	1,400	'93. 7. 23

질의 · 서면 답변서

질 문	김종영 위원	답 변	평창군수(상공과장)
회 의	제46회 평창군의회 (정기회)행정사무감사 4차특위('96. 11. 28)		
<p>[질문요지]</p> <p>○ 평창군 관내 중소기업체 현황은 ?</p>			

[답 변]

“별 첨”

□ 공장등록현황

번호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 소재지	공장의업종	건축면적 (㎡)	공장 등록 일자
소계	【음식료품】	【18】				
1	코린화학	윤병성	용평면 장평리380	옥수수가공	50	'90. 3.17
2	대화새마을부업 단지	권연학	대화면 대화7리507	엿가공	295	'91. 5.22
3	협동창고	전병인	평창읍 도동리130-1	임가공도정	581	'91. 5.22
4	합동정미소	주택식	봉평면 창동리270-3	임가공도정	132	'91. 5.22
5	평창식품	김원일	평창읍 상리247-2	두부제조업	117	'91. 5.22
6	(주)평창식품	양영남	용평면 재산리1427-7	채소절임식 품제조업	2,662	'92.12.30
7	순흥정미소	김홍모	평창읍 다수리289-7	임가공도정	71	'93. 2.13
8	용전정미소	김진명	용평면 용전리469	임가공도정 업	27	'93. 2.13
9	청심정미소	이명균	진부면 거문리264-7	임가공도정 업	87	'93. 2.13
10	송정정미소	임창래	진부면 송정리1315	임가공도정 업	90	'93. 2.13
11	무진정미소	김이중	평창읍 후평리228-1	임가공도정 업	312	'93. 2.13
12	풍년정미소	박성주	평창읍 주진1리326	임가공도정	81	'93. 2.13
13	협동정미소	김병기	대화면 하안미6리 1068-22	임가공도정	92	'93. 5. 3

번호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 장 소 재 지	공장의업종	건축면적 (㎡)	공 등 일 장 특 자
14	오대산생약농산	안규태	진부면 척천리24-3	한약제가공 및제조	328	'96. 8. 10
15	봉평농협	강충일	봉평면 원길리산330	국수제조업 곡물제분업	1,504	'95. 1. 27
16	진부농협오대산 김치공장	이석호	진부면 송정리2133-9	채소절임식 품제조업	2,412	'95. 4. 17
17	(주)평창참식품	조성용	대화면 신리661-1	채소절임식 품제조업	1,572	'95. 12. 4
18	베델상사	이주형	평창읍 주진리291-1	두부제조업	800	'96. 1. 23
소 계	【종이·인쇄】	【4】				
19	삼일제제소	이충일	진부면 상진부리245-3	일반제제업	543	'93. 8. 4
20	백림제제소	황준진	도암면 유천리641	일반제제업	252	'94. 1. 28
21	압강제제소	김성기	대화면 대화3리1194-1	일반제제업	444	'94. 7. 2
22	창성포장	최창용	진부면 하진부리678-3	포장용판지	490	'95. 3. 10
소 계	【나무·가구】	【7】				
23	대관령공예사	장영수	도암면 황계리377-107	목공예	72	'90. 12. 2
24	봉평실업	송치원	봉평면 원길리317-1	목제가공	544	'90. 12. 2
25	대흥상사	김동호	진부면 상진부리247-7	목공예	99	'93. 2. 13

번호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 장 소 제 지	공장의업종	건축면적 (㎡)	공 장 등 일 장 특 자
26	평창군산림조합 제재소	정경섭	평창읍 후평리11-2	일반제재업	373	'93. 7.23
27	금강공예사	한영태	진부면 하진부8리 195-3	장식응목제 품제조업	70	'95. 5.12
28	대흥제재소	김동호	진부면 상진부리247-7	일반제재업	393	'95. 9.30
29	봉평.응평.대화 톱밥공장운영위 원회	김운수	응평면 백옥포리 산68-1	제생목제제 조업	550	'95.12. 7
소 계	【비금속광물】	【9】				
30	태창연탄	이춘우	평창읍 상리404-1	무연탄	1,745	'87. 4. 5
31	삼양진흥(주)	최창순	응평면 속사리692-4	아스콘제조	1,245	'90.12. 2
32	현림레미콘(주)	박승철	평창읍 상리48-1	레미콘제조	910	'91.11.18
33	우일레미콘(주)	한 광	진부면 송정리2091	레미콘제조 아스콘제조	2,151	'92. 1.15
34	형제블럭	이용주	평창읍 총부1리508-1	벽돌제조 아스콘제조	86	'92. 8.18
35	(주)국제광업	이춘길	밤림면 운교리22	비금속광물 (규석)	1,400	'83. 7.23
36	대암산업(주)	박승기	봉평면 우이리991-1	레미콘제조 업	603	'94. 9.24
37	강일레미콘(주)	정형욱	도암면 유천리39-4	레미콘제조 업	1,030	'94.11. 2
38	금강기업사	최환규	진부면 하진부리731	벽돌및블럭 제조업	337	'95.11. 6

번호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 장 소 재 지	공장의업종	건축면적 (㎡)	공 업 일 장 특 자
소계	【화학섬유.고무.프라스틱】	【4】				
39	강원프라스틱(주)	김재하	평창읍 주진리516-1	농업용필름	1,837	'91. 7. 2
40	동원그린비료	고종길	대화면 하안미5리 146	농업용비료	572	'93. 2.13
41	진부농협공동퇴비제조장	이석호	진부면 송정리2099	유기질비료제조업	1,650	'94. 7.12
42	(주)한그루산업	곽근태	평창읍 주진리516-15	일반플라스틱제조업	940	'95. 3.28
소계	【섬유.의복】	【1】				
43	우진ACT(주)	신병순	평창읍 주진1리516-5	PVC 무진장갑	2,274	'90. 7.31
소계	【조립금속.기계장비】	【4】				
44	거성개발(주)	윤순호	평창읍 주진1리516-12	상하수도처리 기자재	1,238	'90. 6.27
45	덕신휘팅(주)	이병운	평창읍 주진1리516-9	동관이움쇠	1,886	'90.12. 1
46	한성전원(주)	이수복	평창읍 주진리516-11	배전반제조업	858	'95. 7.26
47	창성산업(주)	김만복	평창읍 주진1리516-22	프라스틱 압출품	911	'93. 7. 1
소계	【기타】	【2】				
48	(주)벽수산업	심경섭	평창읍 주진리	가정용도자기제조업	1,348	'96. 9.30

번 호	회 사 명	대표자 성 명	공 장 소 재 지	공장의업종	건축면적 (㎡)	공 등 일 장 특 자
49	(주)신호전자통신	이순욱	평창읍 주진리516	전자직접회 토제조업	1,394	'96. 9.30
	이		하 빈		칸	

질의 · 답변서

질의	이수현 위원	답변	평창군수(축산과장)
회의	제46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4차 행정감사특위 ('96. 11. 28)		
<p>〈질의요지〉</p> <p style="text-align: center;">- '96. 7. 26일 군수께서 양계양돈사업 확대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내용과 양돈단지 재확정 과정중 토지매입 등기부등본이나 토지사용 승낙서 제출</p>			

〈답 변〉


- 별 첨 -

"천혜자원 우리평창 함께가꿀 미래의땅"
평 창 군

우232 - 800 강원 평창 평창 하리 210-2 / 전화 (0374) 30- 2291 / 담당 권혁수(행291)

문서번호 지역 13600 - 21
 시행일자 1996. 7. 31.(3년)

경유
 받음 받는곳 참조
 참조

선결	과장	지시	지시사항 상한지점 수립, 정공추진
접	일차시간	결	
수	번호	재	
처리과		공	계장
담당자		람	

제목 군수지시사항 시달

1. '96. 7. 29(월)일 간부회의시 군수지시사항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소관 부서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2. 특히 앞으로 시달되는 군수 지시사항중 전부서 공통사항을 제외한 소관별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붙임 : 군수지시사항 1부. 끝.

평 창 군

받는곳 : 노, 로, 도(1~8)



군 수 지 시 사 항

지시번호	지 시 내 용	소관부서
96- 7-29- 42	<input type="checkbox"/> 양계, 양돈사업 확대방안 강구 - 우리군민이 소비하는 육류중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대부분이 외지에서 반입되고 있는 실정임. - 군민이 소비하는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양계, 양돈사업을 확대하기 바람.	축 산 과
96- 7-29- 43	<input type="checkbox"/> 축산부산물을 이용한 발효퇴비 생산시설 확대 - 축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의 대부분을 외지에서 반입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군에 반입되는 퇴비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하기 바람, - 퇴비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축산부산물(양계, 양돈 한우, 젖소등)을 이용한 발효퇴비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환경보존 효과도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농 정 과
96- 7-29- 44	<input type="checkbox"/> 유실수, 관상수등 식재권장 - 각종 개발로 인하여 산림이 부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나무를 심지않고 있음 - 따라서 주택신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시에는 조건부로 유실수나 관상수 10그루 이상 식재토록 권장하기 바람.	농 정 과 도 시 과

토지사용승락서

대상토지

소 개 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사용승락면적 (㎡)	용 도
대화면 대화리	594-9	전	724	724	
	599	전	15,478	15,478	
	600-1	전	1759	1759	

토지 소유주

○ 주소 :

○ 성 명 :

토지 사용자

○ 주소 :

○ 성 명 : 이 혁 찬

위와같이 토지사용을 승락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토지소유자 주소 : 평안군 대화면 대화리 603

성 명 : 이 균 승



주민등록번호 : 690920 [REDACTED]

주민등록 번호	590920-	인감증명서	본인	대리
성명 (한자)	이준승 (李 俊 承)		인 감	
주소 이 동 사 회	순서	주소 (동/반)	전입	전출
	1	강원도 평강군 대화면 대화리 198번지	5/3 91.1.16	94.4.15
	2	강원도 평강군 대화면 대화리 608번지	8/4 94.4.16	
	3			
	4			
	5			
	6			
	7			
여행중의주소 (국내주소지)			국 적 (외국인)	
국외주소지				
부 매 등 수 산 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 고				
1. 부동산매수란에는 부동산 매수용으로 증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재하고 부동산 매도용 이외의 경우는 "빈란"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위 인감은 신고인감과 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회 면				



사용용도

※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기재하여 사용한
- 463 -

토지사용승락서

대상토지

소계지	지번	지목	지적 (㎡)	사용승락면적 (㎡)	용도
대화면	598	전	3,332	3,332	
대화리	601-1	전	2,479	2,479	
	605	전	2,625	2,625	

토지 소유주

○ 주소 :

○ 성명 :

토지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이 희 찬

위와같이 토지사용을 승락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토지소유자 주소 : 충청남도 대화면 대화리 4-13번지

성명 : 김 계 관 (인) 

주민등록번호 : 70210-XXXXXXXXXX

주민등록 번호	570219-	인감증명서	출인	대리
------------	---------	-------	----	----

성명 (한자)	金在寬 (金在寬)	인감	
------------	--------------	----	--

주소이동사	순서	주소 (동/반)	전입	전출
	1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834번지 13	5/3 89.1.6	
	2			
	3			
	4			
	5			
	6			
	7			
	8			



이행중의주소 (국내주소지)	국적 (외국인)
-------------------	-------------

국의주소지

부동산 매수 산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 부동산매수란에는 부동산 매수용으로 증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재하고 부동산 매도용 이외의 경우는 "빈란"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이전한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위 인감은 신고인감과 불일치함을 증명합니다.

대 화 면

사용용도

'토지사용승락서

대상토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사용승락면적 (㎡)	용 도
대화면	604	전	4,393	4,393	
대화리	602	전	2,129	2,129	
	603	전	3,580	3,580	

토지 소유주

0 주소 :

0 성 명 :

토지 사용자

0 주소 :

0 성 명 : 이 희 찬

위와같이 토지사용을 승락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정찬은 대화면 대화리 515번지
토지소유자 주소 : 이 봉 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691211- [REDACTED]



주민등록 번호	691211-	인감증명서	본인	대리
------------	---------	-------	----	----

성명 (한자)	이복승 (李 丙 承)	인감	
------------	----------------	----	---

주소이동사	순서	주소 (동/반)	전입	전출
	1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985번지	92. 11. 2	993. 10. 8
2	강원도 평강군 대화면 가파리 849번지	93. 10. 9		
3				
4				
5				
6				
7				
8				



이행중의주소 (국내주소지)	국적 (외국인)
-------------------	-------------

국외주소지

부동산 매수 산자	성명(법인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	--------

비고

- 부동산매수란에는 부동산 매수용으로 증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재하고 부동산 매도용 이외의 경우는 "빈란"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위 인감은 신고인감과 불립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1995. 12. 26

대 화 면 장

사용용도	※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함
------	---------------------------

토지사용승인서

대상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사용승락면적 (㎡)	용도
대화면 대화리	601	전	21,207	21,207	

토지 소유주

0 주소 :

0 성명 :

토지 사용자

0 주소 :

0 성명 : 이 희 찬

위와같이 토지사용을 승락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토지소유자 주소 : 경기도 연천면 임천리 313-4

성명 : 이 희 찬 (인)

주민등록번호 : 85224 [REDACTED]



① 주민등록번호 580524 [redacted] 인감증명서 본인 [redacted]

② 성명 (한자) 표창교봉봉 (홍/반) 인감 [reda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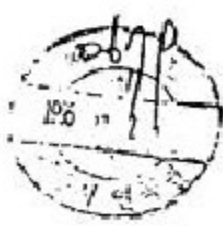
③ 주소이동사항	주 소 (홍/반)	전 입	전 출
	1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리리 3번지	31. 12. 19 확인(인)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여행증의주소 (국내주소지) 국 적 (외 국 인)
 국외주소지

부매 동수 산자
 성명(법인명) 이 하 여 백 주민등록번호 하 여 백
 주 소 이 하 여 백
 비 고

- 부동산 매수자란에는 부동산매도용으로 증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름 기재하고 부동산매도용 이외의 경우에는 "빈란"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면과 그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위 인감은 신고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1995. 12. 22
 년 원 일

강릉시 연곡면장 [redacted]

토지사용승락서

대상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사용승락면적 (㎡)	용 도
대화면 대화리	801	전	21,207	21,207	

토지 소유주

0 주소 :

0 성 명 :

토지 사용자

0 주소 :

0 성 명 : 이 려 찬

위와같이 토지사용을 승락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토지소유자 주소 : 충청남도 대화면 대화리 521-6번지

성명 : 김 희 경



주민등록번호 : 550210- [REDACTED]

토지사용승락서

대상토지

소계지	지번	지목	지적 (㎡)	사용승락면적 (㎡)	용도
대화면 대화리	594-8 600	임야 전	11,157 1,028	11,157 1,028	

토지 소유주

주소 :

성명 :

토지 사용자

주소 :

성명 : 이 계 환

위와같이 토지사용을 승락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토지소유자 주소 : 평강군 대화면 대화리 116207번지

성명 : 손우철

주민등록번호 : 550926- [REDACTED]



주민등록
번호

5 5 0 8 2 1 -

인감증명서

본인

대리

성명
(한자)

손 수 설
(孫 秀 尙)

인
감



주소
이
동
사

순서	주소 (동/반)	전입	전출
1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62번지 2번지	7/2 84.6.28	
2			
3			
4			
5			
6			
7			
8			



여행증의주소
(국내주소지)

국적
(외국인)

국외주소지

부
매
동
수
산
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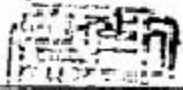
비고

- 부동산매수란에는 부동산 매수용으로 증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재하고 부동산 매도용 이외의 경우는 "반란"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이전한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위 인감은 신고인감과 동렬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1995. 12. 21

대 화 면



사용용도

※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직권기재하여 사용한

질의 · 답변서

질의	우강호 위원	답변	평창군수(축산과장)
회의	제46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4차 행정감사특위 ('96. 11. 28)		
<p>〈질의요지〉</p> <p>- 축산물 등급판정 기반시설사업 시공업체 및 추진상황은?</p>			

〈답 변〉

- 별첨 -

축산물등급 판정시설 보완공사 시행업체 현황 및 추진상황

('96. 11. 28현재)

○ 사업개요

- 위치 :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207-5번지의 1필
- 사업량 : 1 개소(건물증축 63㎡, 냉동.기계설비 1식)
- 시행업체 :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 춘 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41-12)
- 계약금액 : ₩127,923,300원
- 공사기간 : '96. 10. 31 ~ '96. 12. 30

○ 추진상황

- 계약 : '96. 10. 25
- 착공 : '96. 10. 31
- 사업진도

┌	건축공사(발골정형실)부문 : 기초공사 (터파기.철근조립.레미콘타설 완료)
	냉동,기계설비공사 부문 : 기계 현지 제작중 (건축공사 완공후 시행)

○ 금후 추진계획

- 토목 및 건축 공사 : '96. 12. 15
- 기계관련 현수 설비 : '96. 12. 20
- 냉동설비 공사 : '96. 12. 20
- 전기 및 부대설비 공사 : '96. 12. 25
- 마감공사 및 시운전 : '96. 12. 30

질의 · 답변서

질의	이상훈 위원	답변	평창군수(산림과장)
회의	제46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4차 행정감사특위 ('96. 11. 28)		
<p>〈질의요지〉</p> <p style="text-align: center;">- 수간주사 병충해 방제 약제 현황</p>			

〈답 변〉

- 별 첨 -

'96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 현황

구 분	사 업 량	약 제 명	약 제 량	포장별 환산	
				상 자	봉
수 간 주 사	3,500ha	포스팜액제	30,800kg	1,283	2
일 반 해 충	15ha	주론주화제	2,490kg		3
지 면 약 제	60ha	다 수 진	9,000kg	500	

* 상기 방제방법별 약제는 전량 산림청 및 강원도에서 구입하여 현물지원됨.

질의 · 답변서

질의	김 두 경 위 원	답 변	평 창 군 수(산림과장)
회의	제46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 행정감사특위 ('96. 11. 28)		
<p>〈질의요지〉</p> <p style="text-align: center;">- 조림지 지도점검 결과 제출</p>			

〈답 변〉

- 별 첨 -

'96 유 민 빌 조 립 활 좌 상 황

구분	계			장 기 수			내 표			환 경 조 립		
	시제분수	원리분수	%	시제분수	원리분수	%	시제분수	원리분수	%	시제분수	원리분수	%
음민면	3,029.5	2,783.4	92	3,006.0	2,772.3	92	6.00	5.50	93	7.50	7.20	96
정 신	18.8	17.7	94	13.5	13.0	96	—	—	—	—	—	—
미 단	13.6	12.6	93	13.2	12.3	93	—	—	—	—	—	—
방 면	184.5	162.3	88	183.3	161.3	88	—	—	—	—	—	—
대 지	92.3	86.2	93	91.8	85.8	93	—	—	—	—	—	—
공 권	1,381.4	1,292.1	93	1,367.4	1,279.2	93	4.50	4.10	93	7.50	7.20	96
공 권	381.9	345.3	90	381.9	345.3	90	—	—	—	—	—	—
전 부	871.5	805.4	92	869.4	803.6	92	1.50	1.40	94	—	—	—
도 위	85.5	71.8	84	85.5	71.8	84	—	—	—	—	—	—

구분 읍면별	출연내부 제조회				기 타			비 고
	식재본수	환좌본수	%	식재본수	환좌본수	%		
	2.00	1.60	84	8.00	6.80	85		
평 창	—	—	5.30	4.70	88			
비 단	—	—	0.40	0.30	75			
방 뒤	—	—	1.20	1.00	83			
데 화	—	—	0.50	0.40	80			
상 평	2.00	1.60	84	—	—			
용 평	—	—	—	—	—			
진 구	—	—	—	0.60	0.40	66		
도 합	—	—	—	—	—			

질의 · 답변서

질의	김 두 경 위원	답 변	평 창 군 수(건설과장)
회의	제46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4차 행정감사특위 ('96. 11. 28)		
<p>〈질의요지〉</p> <p style="margin-left: 40px;">- 봉평면 면은, 무이 취락지구 지정계획 추진 상황은?</p>			

〈답 변〉

- '94. 8. 16 면은, 무이일원 준도시내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변경(안) 내부결정
- 면은지구
 - 준도시(취락지구)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였으나 구획선의 조정문제, 상업지구의 확대문제등 주민의견의 불일지로 현재까지 구획면적만 당초면적 383,781㎡에서 295,225㎡로 축소 조정된 상태이므로 '96. 12. 중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 무이지구
 - 현재까지 관련실과 및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의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강원도 농어업정책과의 협의만 남겨놓고 있으므로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강원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요청코자 합니다.